

# 사증신청 시 유의 및 안내사항

2022. 7. 7.

## □ 유의 사항

1. 사증 신청은 원칙적으로 본인이 직접 비자신청센터를 방문하거나, 「주청다오 대한민국 총영사관(이하 '당관)」 지정 비자대행사를 통해서 접수하여야 합니다.
  - 사증 신청과 관련하여 문의가 있으신 경우에는 당관, 비자신청센터, 대행사와 상담해 주시기 바라며, 친구·지인 등 제3자를 통해 사증을 신청할 경우에는 부정확한 자료 제출 등으로 사증이 불허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전화 : △ 당관 0532)8897-6001 △ 비자신청센터 : 400-813-3666

△ 지정 대행사 명단 및 연락처는 붙임 참고

2. 사증 신청을 대행사에게 위임한 경우, 신청인은 반드시 신청서가 정확하게 작성되었는지, 신청서와 구비서류 등 일체가 진실에 부합하는지 등을 분명하게 확인한 후 신청서에 직접 서명하여야 합니다.
3. 사증 신청서에 학력, 직업, 연락처, 입국목적 등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금융거래 내역서, 예금증명서, 영업집조, 재직·재학증명서 등을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 해당 사증은 불허되고 일정기간 사증발급이 제한됨은 물론 수사기관에 고발되어 관련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기 바랍니다.
4. 모든 서류는 원본을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서류의 유효기간(공증서 포함)은 별도의 유효기간이 설정되지 않은 경우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일 것을 요합니다.
5. 사증심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인 등에 대해 면담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6. 신분증은 반드시 2세대 신분증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여권은 잔여 유효기간이 사증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합니다.
7. 신분증, 호구부, 결혼증 등 개인 신분 서류나 원본사진 등 보조자료는 접수(심사) 후 원본을 반환하나, 기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8. 사증발급 신청 수수료는 접수가 이루어진 이후에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9. 입국목적별 구비서류는 공관별로 다소 차이가 있으므로, 다른 공관에 사증을 신청할 때에는 해당 공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안내 사항

1. <관할> 사증 신청은 원칙적으로 호구지 관할 공관에 하여야 하며, 당관 관할 지역은 산둥성입니다.

### ※ 예외

- ① 상용(C-3-4), 단기취업(C-4), 법인기업체 대표 및 임직원에 대한 재외동포(F-4) 사증 : 소속회사 확인이 필요하므로 회사소재지 관할 공관에 신청
- ② 유학(D-2) 및 한국어연수(D-4-1) 사증은 산둥성내 소재 학교 재학생 및 산둥성 호구자 모두 당관에 신청 가능
- ③ 동포방문(C-3-8), 60세 이상 재외동포(F-4), 방문취업 만기출국자(H-2-7) 사증 : 호구지에 관계없이 당관에 신청 가능
- ④ 사증발급인정서 소지자 : 호구지에 관계없이 전 중국 공관에 신청 가능

2. <사회보험·납세증명> 입국목적별 구비서류에서 요구하는 사회보험 및 세금 납부증명은 이를 출력하여 비밀번호를 기재 후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단, 납부증명서 상에 현출된 QR코드를 스캔하는 등 객관적인 방법으로 납부증명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비밀번호 제출이 면제됩니다.
3. <외지호구자> 당관 관할지역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거주증명)를 첨부해야만 당관에 사증 신청 가능합니다.

### ※ 거주증명 예시

- 거주증(원본), 개인소득세 납부증명서, 사회보험 납부증명서, 학신망(중국 고등교육 학적/학력인증보고), 공적금 등 당관 관할지역에 거주하고 있음이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서류

4. <중국인이 아닌 제3국적자> 중국 내에서 2년 이상 장기거주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을 갖추고 당관 관할지역에서 실제로 3개월 이상 거주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당관에 사증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중국 내 거류허가증의 잔여 유효기간이 3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합니다.
5. <결핵진단서>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장기체류자격(D-H계열)에 해당하는 사증을 신청할 경우에는 당관 지정병원(홈페이지 참조)에서 발급한 결핵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0.4.1 개정 시행)

※ 체류기간이 90일 이하라도 장기체류자격 사증을 신청하는 경우 결핵진단서 제출 대상임.

- 결핵진단서 유효기간 : 사증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 결혼이민(F-6) 사증신청 시 건강진단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결핵진단서 제출 불요

### ※ 결핵진단서 제출 예외

- 만 6세 미만자 / 임신·출산·모유수유 등으로 결핵 검사가 곤란한 경우 제출 불요



# 단 수 사 증

## 1. 외교, 공무(A-1, A-2)

【체류기간 90일 이하, 유효기간 3개월】

[☞ 목록으로 돌아가기 클릭!](#)

발급대상	초청인측 구비서류	신청인측 구비서류
<p><b>1. 외교(A-1)</b> 외교관 여권을 소지하고 외교 업무를 수행하려는 자와 동반 가족(배우자, 미성년자녀, 부모, 배우자의 부모)</p>	<p>① 초청장 또는 한국 정부기관의 협조요청 공문 ② 사업자등록증명(한국 정부기관 초청이 아닌 경우)</p>	<p>① 사증발급신청서&lt;칼라사진 부착&gt; ② 여권, 신분증의 원본 및 사본 ③ 재직증명서 ④ 중국 외교부 등의 협조공문 ⑤ 동반가족의 경우 가족관계 입증 서류</p>
<p><b>2. 공무(A-2)</b> 공무 여권을 소지하고 공무활동을 하려는 자와 동반 가족(배우자, 미성년자녀, 부모, 배우자의 부모)</p> <p>※ 입국목적 및 근무처별 분류</p> <p>① A-2-1(외국정부) : 주한공관, 외국정부를 대표하는 국내 소재 정부기구, 국내 지자체 등</p> <p>② A-2-2(국제기구) : 국제기구</p> <p>③ A-2-3(유엔사) : 유엔군사령부</p> <p>④ A-2-4(기타공무) : 국제회의, 양자회의 등 목적 단기방문</p>		

- ※ 외교관·공무 여권을 소지하고 30일 이내의 외교·공무활동을 하려는 경우 사증 불요(사증면제협정 대상)
- ※ 공무 수행차 입국하여 장기 체류하려는 모든 외국인은 관용여권으로 무사증 입국이 가능하더라도 반드시 재외공관에서 사증발급 필요

## 2. 중국 청소년 수학여행단 일반무사증(B-2)

【체류기간 15일 이하, 유효기간 3개월】

[☞ 목록으로 돌아가기 클릭!](#)

발급대상	초청인측 구비서류	신청인측 구비서류
중국의 초·중·고등학교 재학생, 인솔교사, 수학여행주관단체 관계자 * 수수료 면제	없음	<p>&lt;학교장 및 지정여행사 신청시&gt;</p> <p>① 여권 ② 청소년수학여행단 영사확인서 각 2부 ③ 청소년수학여행단 명부 각 2부 * 2,3번 서류 홈페이지에서 다운받기 ④ 재학입증서류 * 학교장 협조요청 공문, 재학증명서, 학생증 사본 중 택 1</p> <p>&lt;그 이외의 단체가 신청할 시&gt;</p> <p>①~④ 서류 및 수학여행 주관단체 입증자료 추가제출 * 영업집조 또는 기구대마증 사본</p>

## 3. 일시취재(C-1)

【체류기간 90일 이하, 유효기간 3개월】

[☞ 목록으로 돌아가기 클릭!](#)

발급대상	초청인측 구비서류	신청인측 구비서류
<p>1. 중국의 신문, 방송, 잡지 기타 보도기관으로부터 파견되어 단기간 취재, 보도 활동을 하려는 자</p> <p>2. 외국 보도기관과의 계약에 의하여 단기간 취재, 보도활동을 하려는 자</p> <p>3. 외국언론사의 지사 설치 준비를 위해 단기간 활동하려는 자</p>	<p>① 초청장 * 초청사유 및 귀국 보장각서 내용 기재 ② 사업자등록증명 ③ 납부내역증명</p> <p>* 정부기관 및 그 산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 공공단체에서 초청하는 경우에는 2,3번 서류 제출 불요</p>	<p>① 사증발급신청서&lt;칼라사진 부착&gt; ② 여권, 신분증의 원본 및 사본 ③ 재직증명서 또는 기자신분증 사본 ④ 파견증명서</p>

## 4. 단기방문 일반(C-3)

### 4-1. 단기일반(C-3-1)

#### 4-1-1. 각종 행사나 친선경기, 회의참가 등

【체류기간 90일 이하, 유효기간 3개월】

[☞ 목록으로 돌아가기 클릭!](#)

발급대상	초청인측 구비서류	신청인측 구비서류
<p>각종 행사나 친선경기, 회의참가 (공인된 국제회의) 또는 참관, 문화예술, 종교의식 참석, 학술 자료 수집, 기타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단기간 체류하려는 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자 제외)</p> <p>* 국내에서 개최되는 친선경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로 입상하여야만 상금을 받을 수 있는 골프, 축구 등 경기 참가자 및 방송출연자 포함</p>	<p>① 초청장 * 초청사유 및 귀국보장각서 내용이 기재된 것</p> <p>②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고유번호증</p> <p>③ 행사나 친선경기, 회의 등 관련 입증서류 또는 소개자료</p>	<p><b>&lt;회사 등 재직자인 경우&gt;</b></p> <p>① 사증발급신청서&lt;칼라사진 부착&gt; ② 여권, 신분증의 원본 및 사본 ③ 재직증명서(재직기간, 담당부서 기재 및 회사직인 날인) ④ 재직입증서류(택일) 1) 최근 6개월분 개인소득세 납부증명서 2) 최근 6개월분 사회보험 납부증명 및 사회보험카드 사본 3) 최근 6개월분 급여 은행이체(입금) 입증자료 원본(통장 또는 은행거내역서) * 급여입금 부분은 체크하여 제출바람 ⑤ 영업집조 부분의 사본</p> <p><b>&lt;회사 등 재직자가 아닌 경우&gt;</b></p> <p>①, ② 상동 ③ 단수사증 4-5 일반관광(C-3-9) ④ 항 '회사 등 재직자가 아닌 경우' 의 서류 제출</p> <p><b>&lt;17세 미만자인 경우&gt;</b></p> <p>①, ② 상동 ③ 해외여행 부모동의서(자유양식) ④ 출생의학증명서 ⑤ 학교·학원 등 재학 중일 경우 재학증명서 등 증빙자료</p>

#### 4-1-2. 외국인 투자자

【체류기간 90일 이하, 유효기간 3개월】

[☞ 목록으로 돌아가기 클릭!](#)

발급대상	초청인측 구비서류	신청인측 구비서류
<p>국내 법인(설립중인 법인 포함) 투자 목적으로 <b>1억원 이상</b>을 국내로 송금 완료한 자</p> <p>* 해외 송금확인증에 송금 목적이 '투자'로 기재되고, 송금자와 비자발급 신청인이 동일해야 함</p>	<p>① 초청장</p> <p>* 초청사유 및 귀국보장각서 내용 기재</p> <p>②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고유번호증</p>	<p><b>&lt;회사 등 재직자인 경우&gt;</b></p> <p>① 사증발급신청서&lt;칼라사진 부착&gt;</p> <p>② 여권, 신분증의 원본 및 사본</p> <p>③ 재직증명서(재직기간, 담당부서 기재 및 회사직인 날인)</p> <p>④ 재직입증서류(택일)</p> <p>1) 최근 6개월분 개인소득세 납부증명서</p> <p>2) 최근 6개월분 사회보험 납부증명 및 사회보험카드 사본</p> <p>3) 최근 6개월분 급여 은행이체(입금)입증자료 원본(통장 또는 은행거래내역서)</p> <p>* 급여입금 부분은 체크하여 제출바람</p> <p>⑤ 영업집조 부분의 사본</p> <p>⑥ 해외 송금확인증</p>
<p>공익사업 투자이민 목적으로 <b>5억원 이상(55세 이상은 3억원 이상)</b>을 국내로 송금 완료한 자</p> <p>* 공관에서 공익사업 투자이민 목적의 송금인지 확인 예정</p>		<p>①, ② 상동</p> <p>③ 단수사증 4-5 일반관광(C-3-9)</p> <p>④항 '회사 등 재직자가 아닌 경우' 의 서류 제출</p>

#### 4-1-3. 일반연수

【체류기간 90일 이하, 유효기간 3개월】

[☞ 목록으로 돌아가기 클릭!](#)

발급대상	초청인측 구비서류	신청인측 구비서류
<p>정부, 기업 등에서 기술, 기능을 연마하기 위해 입국하려는 자</p>	<p>① 초청장</p> <p>* 초청사유 및 귀국보장각서 내용이 기재된 것</p> <p>②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고유번호증</p> <p>③ 연수계획서</p>	<p>① 사증발급신청서&lt;칼라사진 부착&gt;</p> <p>② 여권, 신분증의 원본 및 사본</p> <p>③ 재직증명서(재직기간, 담당부서 기재 및 회사직인 날인)</p> <p>④ 재직입증서류(택일)</p> <p>1) 최근 6개월분 개인소득세 납부증명서</p> <p>2) 최근 6개월분 사회보험 납부증명 및 사회보험카드 사본</p> <p>3) 최근 6개월분 급여 은행이체(입금)입증자료 원본(통장 또는 은행거래내역서)</p> <p>* 급여입금 부분은 체크하여 제출바람</p> <p>⑤ 영업집조 부분의 사본</p>

#### 4-1-4. 국민의 배우자 및 자녀의 방문(비거주 목적)

【체류기간 90일 이하, 유효기간 3개월】

[☞ 목록으로 돌아가기 클릭!](#)

발급대상	초청인측 구비서류	신청인측 구비서류
<p>국민의 배우자 및 그 미성년자녀가 거주목적 이외의 사유로 단기 방문 하고자 하는 경우</p> <p>* 국민의 자녀는 국민과 외국인 배우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에 한함</p> <p>* 중국인 배우자가 거주목적으로 방문하는 경우 반드시 결혼이민사증(F-6-1)을 신청하여야 함</p>	<p>①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원본</p> <p>②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원본</p> <p>* 국적변동이 있을 경우 기본증명서(상세) 원본 제출</p> <p>③ 결혼비자(F-6-1)가 아닌 단기(C-3-1)비자를 신청하는 사유서</p> <p>④ 교제 경위서(자유양식)</p>	<p>① 사증발급신청서&lt;칼라사진 부착&gt;</p> <p>② 여권, 신분증의 원본 및 사본</p> <p>③ 호구부의 원본 및 사본</p> <p>* 국민의 자녀로써 한국에 출생신고가 되어있지 않은 경우 출생의학증명서 제출</p>

#### 4-1-5. 친지방문 및 결혼식 참석 등을 위한 친인척 초청

【체류기간 90일 이하, 유효기간 3개월】

[☞ 목록으로 돌아가기 클릭!](#)

발급대상	초청인측 구비서류	신청인측 구비서류
<p>1. 친지방문</p> <p>국민 또는 영주권자의 <u>2촌 이내</u> 친족으로서, 국민 또는 영주권자로부터 초청을 받아 단기방문 하고자 하는 자</p> <p>2. 결혼식 참석</p> <p>국민 또는 영주권자의 <u>4촌 이내</u> 친족으로서, 국민 또는 영주권자인 결혼 당사자로부터 초청을 받아 결혼식 참석을 하고자 하는 자</p>	<p>① 초청장(홈페이지 참조)</p> <p>② 주민등록증 사본</p> <p>③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원본</p> <p>④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원본</p> <p>* 국적변동이 있을 경우 기본증명서(상세) 원본 제출</p> <p>* 영주권자의 경우에는 ②, ③, ④ 대신 외국인등록증 사본 제출</p> <p>* 결혼식 참석인 경우 청첩장 또는 예식장 예약확인서 추가 제출</p>	<p>① 사증발급신청서&lt;칼라사진 부착&gt;</p> <p>② 여권, 신분증의 원본 및 사본</p> <p>③ 호구부의 원본 및 사본</p> <p>* 호구부에 의해 입증이 안되는 경우 공적공부상 입증자료 추가 제출</p> <p>④ 친속관계진술서(홈페이지 참조)</p> <p>* 친속관계진술서 작성시 초청자 및 피초청자가 자필서명해야 함</p> <p>⑤ 함께 찍은 사진자료(1장 이상)</p> <p>* 결혼식 참석의 경우 ①~④만 제출</p> <p>* 부 또는 모와 동반하는 자녀의 경우에는 ①~③만 제출</p> <p>* 중국인 자녀를 입양한 경우 피입양자 비자 신청시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민정부서에서 발급한 입양 등기증 원본을 제출</p>

#### 4-1-6. 가족사망 또는 병간호

【체류기간 90일 이하, 유효기간 3개월】

[☞ 목록으로 돌아가기 클릭!](#)

발급대상	초청인측 구비서류	신청인측 구비서류
대한민국에 체류중인 가족이 사망하여 방한하고자 하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한국 병원의 사망진단서 또는 주한 중국공관 명의 공문</li> <li>② 사망자의 여권 또는 신분증 사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사증발급신청서&lt;칼라사진 부착&gt;</li> <li>② 여권, 신분증의 원본 및 사본</li> <li>③ 호구부의 원본 및 사본</li> <li>④ 가족관계 입증서류</li> </ul>
대한민국에 체류중인 가족의 병간호를 위해 방한하고자 하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한국 병원의 진단서</li> <li>② 환자의 여권 또는 신분증 사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사증발급신청서&lt;칼라사진 부착&gt;</li> <li>② 여권, 신분증의 원본 및 사본</li> <li>③ 호구부의 원본 및 사본</li> <li>④ 가족관계 입증서류</li> </ul> <p>※ 결핵환자 간병 목적인 경우는 출입경                      검험검역국에서 발급한 결핵진단서                      제출(16.3.2.부)</p>

#### 4-1-7. 단기어학연수

【체류기간 90일 이하, 유효기간 3개월】

[☞ 목록으로 돌아가기 클릭!](#)

발급대상	초청인측 구비서류	신청인측 구비서류
단기간 (90일 이내) 어학연수를 하려는 자 * 91일 이상 장기어학연수 희망자는 7.한국어연수 참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표준입학허가서 (국제교육진흥원지원자일 경우 단기교육과정 지원서 제출)</li> <li>② 초청학교 고유번호증 (사본 제출 가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사증발급신청서&lt;칼라사진 부착&gt;</li> <li>② 여권, 신분증의 원본 및 사본</li> <li>③ 호구부의 원본 및 사본</li> <li>④ 재학(혹은 졸업)증명서 원본</li> <li>⑤ 학비납부증명서 원본</li> <li>⑥ 경제능력입증서류(원본 지참)</li> </ul> <p>* 최근 6개월 이상 신용카드 또는 은행                      거래사용내역서, 자동차 소유증명서,                      재직증명서, 사회보험내역서 등 1개 이상                      제출</p> <p>* 부모님의 경제능력입증서류 제출할 경우                      가족관계입증서류 추가제출</p>

## 4-2. 단체관광 등(C-3-2)

### 4-2-1. 단체관광 : 원칙적으로 전자사증 신청 대상임

【체류기간 15일 이하, 유효기간 3개월】

[☞ 목록으로 돌아가기 클릭!](#)

발급대상	초청인측 구비서류	신청인측 구비서류
한중 양국이 각각 지정한 중국 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가 초청하는 3인 이상 단체관광객	① 중국단체관광객 유치사실 확인서	① 단체사증발급신청서 ② 여권, 신분증 사본 ③ 요청서 * 여행사 대표의 서명과 여행사 직인이 날인된 공문 ④ 여행계획표

### 4-2-2. 무사증 입국 수학여행단 인솔 여행사 직원

【체류기간 15일 이하, 유효기간 3개월】

[☞ 목록으로 돌아가기 클릭!](#)

발급대상	초청인측 구비서류	신청인측 구비서류
한국에 무사증으로 입국하고자 당관에서 영사확인을 받은 수학여행 단체를 인솔하는 여행사 직원	없음	① 사증발급신청서<칼라사진 부착> ② 여권 및 신분증의 사본 ③ 가이드 신분증 ④ 재직증명서

### 4-2-3. 개별보증

【체류기간 30일 이하, 유효기간 3개월】

[☞ 목록으로 돌아가기 클릭!](#)

발급대상	초청인측 구비서류	신청인측 구비서류
당관 지정여행사 및 대행기관의 보증제도를 이용하여 개별적으로 관광하려는 자 (공항만 소무역활동자 포함) * 보증제도 실시 지정 여행사 및 대행 기관은 홈페이지 사증신청 대행 공식지정기관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지정여행사 또는 대행기관에 신청	없음	① 사증발급신청서<칼라사진 부착> ② 여권, 신분증의 원본 및 사본 ③ 보증서 * 지정여행사에 문의바람 ④ 외지 호구자 : 경제능력 입증자료 (C-3-9 단수 참조) 추가제출

### 4-3. 의료관광(C-3-3)

【체류기간 90일 이하, 유효기간 3개월】

 [목록으로 돌아가기 클릭!](#)

발급대상	초청인측 구비서류	신청인측 구비서류
<p><b>1. 외국인 환자</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강검진, 질병치료, 요양 등의 목적으로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으로서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자</li> </ul> <p><b>2. 동반가족</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간병 또는 동반이 필요한 외국인 환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가족</li> <li>* 외국인환자가 환자송출 계약국가의 국비지원 대상자인 경우 4촌 이내 방계가족까지 허용</li> </ul> <p><b>3. 간병인</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국인 환자를 간호하고 돌보는 일을 담당하는 동반가족이 아닌 제3자 외국인</li> <li>* 환자송출 계약국가의 국비지원 외국인환자를 간호하는 간병인만 허용</li> <li>* 동반가족 또는 간병인은 외국인환자를 간호하기 위해 동반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사증 발급(동반 입국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료관광 사증 신청불가)</li> <li>* 장기사증(G-1-10)은 질병치료자에 한하여 사증발급신청서를 통해서만 발급 가능</li> </ul>	<p>①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명의 초청장</p> <p>* 외국인환자유치 정보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www.medicalkorea.or.kr)</p>	<p>① 사증발급신청서&lt;칼라사진 부착&gt;</p> <p>② 여권, 신분증의 원본 및 사본</p> <p>③ 보건복지부 의료기관 유치기관 등록증 사본</p> <p>④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의료목적 입증서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순 건강검진 목적인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 병원 예약증</li> </ul> </li> <li>* (특정질병 등 치료목적인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 또는 본국 병원의 진단서, 소견서 등과 한국소재 병원 예약증</li> </ul> </li> </ul> <p>⑤ 동반가족 또는 간병인 입증서류(동반 필요성 설명서, 가족관계 입증자료)</p> <p>⑥ 재정능력 입증서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단수사증 4-5. 일반관광(C-3-9)</li> <li>④항 참조</li> </ul>

※ 의료관광 사증으로 한국을 방문한 경력이 있는 경우, 과거 치료기록(의사소견서 및 진단서) 및 재정능력 등을 종합 검토하여 특정질병이 있는 것이 명백하고 복수로 입국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해 복수사증(유효기간 5년) 발급 가능

#### 4-4. 단기상용(C-3-4)

【체류기간 90일 이하, 유효기간 3개월】

[☞ 목록으로 돌아가기 클릭!](#)

발급대상	초청인척 구비서류	신청인척 구비서류
<p>1. 외국기업의 국내지사, 외국인 투자기업 등의 설치준비를 위하여 활동하거나 국내지사 등과의 업무연락을 하려는 자</p> <p>2. 국내 공,사기관의 초청으로 입국하여 국내업체와 구매계약, 시장조사, 상담 등의 활동을 하려는 자</p> <p>3. 기타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단기 체류하려는 자</p> <p>* 해외투자기업 산업연수생 등에 대한 사증발급은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발급한 사증발급인정서에 의해서 사증발급</p> <p>* 90일 이하 단기목적의 산업연수생에 대해서도 사증발급인정서에 의해 사증발급</p>	<p>① 초청장 * 당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 초청장 공증 불요</p> <p>② 사업자등록증명, 법인등기부 등본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p> <p>③ 납부내역증명</p> <p>④ 기타 거래목적 입증자료 또는 소개자료(구매계약서, 사업 추진의향서 또는 합동서, 기타 거래실적 증빙서류: LC사본, 수출입면장, 수출입실적 확인서 등)</p> <p>* 정부기관 및 그 산하단체, 정부투자기관, 각급 학교 등 공공단체에서 초청하는 경우에는 2,3,4번 서류 제출 생략 가능</p> <p>* 과거 상용사증을 2회 이상 발급 받아 방한한 경력이 있을 경우 초청인척 구비서류 4번 및 신청인척 구비서류 5번 제출 생략 가능</p>	<p>① 사증발급신청서&lt;칼라사진 부착&gt;</p> <p>② 여권, 신분증의 원본 및 사본</p> <p>③ 재직증명서 * 재직기간과 담당부서 기재 및 회사직인 날인</p> <p>④ 영업집조 부분의 사본</p> <p>⑤ 재직입증서류(택일)</p> <p>1) 최근 6개월분 개인소득세 납부증명서</p> <p>2) 최근 6개월분 사회보험 납부증명 및 사회보험카드 사본</p> <p>3) 최근 6개월분 급여 은행이체(입금) 입증자료 원본(통장 또는 은행거래내역서) * 급여입금 부분은 체크하여 제출바람</p>

#### 4-5. 일반관광(C-3-9)

【체류기간 90일 이하, 유효기간 3개월】

[☞ 목록으로 돌아가기 클릭!](#)

발급대상	초청인척 구비서류	신청인척 구비서류
<p>충분한 경제적 능력이 입증된 자로서 가족단위 또는 개별적으로 관광하고자 하는 자</p>	<p>없음</p>	<p>&lt;회사 등 재직자인 경우&gt;</p> <p>① 사증발급신청서&lt;칼라사진 부착&gt;</p> <p>② 여권, 신분증의 원본 및 사본</p> <p>③ 여행계획서 *본인이 직접 작성한 실제 여행일정 제출</p> <p>④ 경제능력입증서류( '22.7.1.부터) (필수) ①재직증명서, ②영업집조부분의 사본, ③최근 6개월이상 급여(소득)입금 사실 확인가능한 은행 거래내역서 원본(급여 입금부분은 체크하여 제출) (추가,택1) ①사회보험카드 내역서, ②소득세 증명서</p> <p>* 경제능력 입증서류 제출시, 호구부 사본 제출필수</p>

		<p>&lt;회사 등 재직자가 아닌 경우&gt;</p> <p>①, ②, ③ 상동</p> <p>④경제능력인증서류( '22.7.1.부터) (필수) 소득원에 대한 기술서(임대소득, 이자소득 등) *별도 양식 없음 (추가,택1) ①소득세 증명서, ②최근 6개월이상 급여(소득)입금사실 확인 가능한 은행 거래내역서 원본(급여 입금부분은 체크하여 제출)</p> <p>* 본인 소득이 아닐 경우, 직계가족(배우자, 자녀, 부모)의 소득도 인정</p> <p>※ 경제능력 인증서류 제출시, 호구부 사본 제출필수</p>
--	--	--

## 5. 단기취업(C-4-5)

【체류기간 90일 이하, 유효기간 3개월】

[☞ 목록으로 돌아가기 클릭!](#)

발급대상	초청인착 구비서류	신청인착 구비서류
<p>일시흥행, 광고, 패션모델, 강의, 강연, 연구, 기술지도 등 수익을 목적으로 단기간 취업활동을 하려는 자</p> <p>* 장기취업(체류기간 91일 이상)을 목적으로 입국하려는 경우 단기취업사증 발급대상에서 제외</p>	<p>① 초청장 * 초청사유 및 귀국보장각서 내용 기재</p> <p>② 사업자등록증명 및 법인등기부 등본</p> <p>③ 납부내역증명</p> <p>④ 고용계약서 또는 참가신청서</p> <p>⑤ 주무부처장관의 고용추천서(연예인의 경우에는 영상물 등급위원회의 공연추천서) 또는 고용의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p> <p>* 정부기관 및 그 소속단체, 정부투자기관, 각급 학교등에서 초청하는 경우 2,3번 서류 생략 가능</p> <p style="text-align: center;"><b>&lt;연예인 외의 경우&gt;</b></p> <p>- 프로축구 등 운동선수, 지도자, 심판 등 : 대한축구협회(연맹)의 추천</p> <p>- 프로 바둑기사: 한국기원 등 소속 협회의 고용추천서</p> <p>- 첨단 기술인력(GOLD카드 또는 IT카드) 발급대상자: 한국산업기술재단 또는 한국IT벤처기업중소기업 연합회의 추천서</p> <p>-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과 동 법인의 외국어 강사 : 지방노동판서장의 추천서</p> <p>* 외국전문기술인력에 대하여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추천서를 고용인증서류로 대체가능</p>	<p>① 사증발급신청서&lt;칼라사진 부착&gt;</p> <p>② 여권, 신분증 원본 및 사본</p> <p>③ 재직증명서 * 재직기간, 담당부서 기재 * 회사직인 날인</p> <p>④ 영업집조 부분의 사본</p> <p>⑤ <b>결핵진단서</b> (계절근로자에 한함, 18.3.1부)</p>

<p>수입기계 등의 설치·유지보수, 조선 및 산업설비의 제작·감독 등을 위하여 대한민국 내의 공·사 기관에 파견되어 90일 이내 근무 하려는 자(17.3.29부)</p>	<p>① 초청장 * 초청사유 및 귀국보장각서 내용 기재</p> <p>② 사업자등록증명 및 법인등기부 등본</p> <p>③ 납부내역증명</p> <p>④ 수입기계 도입관련 계약서 (구매계약, 용역 위탁계약) - 계약서에 설치,유지보수 등 의무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별도 표기 요망) - 기계 수입필증 (해당물품 수입관련 세관확인서류)</p>	<p>① 사증발급신청서&lt;칼라사진 부착&gt;</p> <p>② 여권, 신분증 원본 및 사본</p> <p>③ 재직증명서 * 재직기간, 담당부서 기재 * 회사직인 날인</p> <p>④ 영업집조 부분의 사본</p> <p>⑤ 출장증명서(출장기간 포함)</p> <p>⑥ 재직입증서류(아래 중 택1) - 최근 6개월분 개인소득세납부증명 - 최근 6개월분 사회보험가입증명 - 최근 6개월분 급여입금사실내역서</p> <p>⑦ 세관수출신고서(해당물품관련)</p> <p>⑧ 필수기술 보유입증서류(학위증, 자격증 등 ) * 좌측 ④의 수입기계 등 설치, 유지보수 의무를 위한 필수기술을 보유하고 있어야 함 * 자격증이 없는 경우, 동 분야 종사경험이 최소 1년이상이고 동 업무수행에 필수 인력임을 소명하는 자료(17.8.17.부)</p>
--	--	---

## 6. 유학(D-2)

☞ 인증대학 또는 우수인증대학 여부 확인 클릭!

### ◆ 대상별 사증 발급 유형표(2019. 10. 1.부터 시행)

- 아래 표에서 '사증발급' 란에 동그라미(○) 표시가 되어 있는 사증만 재외공관에 사증 신청이 가능하므로 반드시 확인 후 사증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단,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재외공관에 사증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학별	국가별	학생 유형	사증 발급	사증발급 인정서	전자 비자
인증대	국적무관	어학연수(D41)	○	○	×
		유학(D21~8)	○	○	○
	국적무관	어학연수(D41), 유학(D2)	○	×	×
		석사(D23), 박사(D24)	○	×	○
일반대	일반국가	어학연수(D41), 유학(D2)	○	×	×
	중국, 베트남, 몽골, 우즈베크	어학연수(D41)	×	○	×
		유학(D2)	○	×	×
하위대	일반국가	어학연수(D41), 유학(D2)	○	×	×
		중국, 베트남, 몽골, 우즈베크	D21~5, D27	○	×
	컨설팅대		D41, D26, D28	×	○
		비자제한	국적무관	D24, D25, D26	×

### ◆ 심사 기준

대학별	심사 기준
인증대학	우수인증대 ① 표준입학허가서 만으로 심사
	인증 ① + ② 최종학력 + ③ 재정능력* 심사 * 표준입학허가서의 소요경비를 기준으로 1년간(어학연수 6개월)의 재정능력을 심사 / 소요경비는 '등록금+체재비+기타' 모두 포함 (단, 교환학생은 등록금 제외, 체재비·기타만 포함)
일반대학	인증대학과 동일(① + ② + ③) ※ 단, 최근 2년 이내 하위대학(컨설팅, 비자제한)으로 지정된 이력이 있는 대학에 대해서는 컨설팅대학에 준하여 심사
하위대학	컨설팅 인증대학(① + ② + ③) + ④ 한국어능력 입증* * 전문대학 : TOPIK 3급 또는 세종학당 한국어 중급1 이상 대학·대학원 : TOPIK 4급 또는 세종학당 한국어 중급2 이상(예체능은 3급 이상)
	비자제한 사증발급 원칙적으로 금지

- ◆ 공통 서류 : ① 사증발급신청서<칼라사진(3×4cm) 1매 부착>
- ② 여권, 신분증의 원본 및 사본
- ③ 결핵진단서

◆ 예금잔고증명서 관련 세부 기준

- ① 사증발급 신청일 기준 30일 이내 발급된 원본일 것
  - ② 사증발급 신청일 기준 예금잔고증명서 유효기간(예금 동결 기간)이 최소 30일 이상 남아있을 것
    - ※ 다만, 컨설팅대 이하 대학 진학 예정 유학생에 대해서는 상기 ①의 기준을 충족하고, 사증발급 신청일 기준 예금잔고증명서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있을 것
- (학위과정) 연간 2만불 이상(단, 지방 소재 대학은 1만8천불 이상)  
 (어학연수 과정) 대학 소재지와 무관하게 1만불 이상
- ※ 단, 체류기간이 1년 미만인 자에 대해서는 등록금과 체류기간에 비례한 체재비(연도별 1인 가구 주거급여 기준액 × 체류개월 수) 요구

◆ 최종학력 입증서류

- 아래 표에서 정한 학위 과정별로 중국고등교육학생정보망(학신망, [WWW.CHSI.COM.CN](http://WWW.CHSI.COM.CN))의 전자학력인증서류 출력제출

구 분		입 증 내 용	제 출 서 류 (아래 서류 외 불인정)
어학연수(D-4-1) 과정		고교 졸업 이상 학력	
신입학 (D-2-1~D-2-4)	전문학사	고교 졸업 사실	◇ 일반고 학력 - (졸업) CHSI(学信网)
	학사	학사 졸업 사실	
	석사	석사 졸업 사실	
	박사	박사 졸업 사실	
편입학 (D-2-1~D-2-4)	전문학사	고교 졸업 사실 + (전문)학사 재학(졸업) 사실	◇ 전문학사 학력 - (재학) CHSI(学信网) - (졸업) CHSI(学信网)
	학사	① 고교 졸업 사실 + 학사 재학 사실 또는 ② (전문)학사 졸업 사실	
	석사	학사 졸업 사실 + 석사 재학(졸업) 사실	
	박사	석사 졸업 사실 + 박사 재학(졸업) 사실	
교환학생 (D-2-6)	전문학사	중국 전문학사 재학 사실	◇ 학사 이상 학력 - (재학) CHSI(学信网) - (졸업) CHSI(学信网)
	학사	중국 (전문)학사 재학 사실	
	석사	중국 석사 재학 사실	
	박사	중국 박사 재학 사실	
방문학생 (D-2-8)	전문학사	고교 졸업 사실 + 중국 전문학사 재학 사실	- (졸업) CHSI(学信网) 또는 CDGDC(学位网)
	학사	고교 졸업 사실 + 중국 (전문)학사 재학 사실	
	석사	중국 석사 재학 사실	
	박사	중국 박사 재학 사실	
연구유학 (D-2-5)	-	석사 학위 이상 취득 사실	

- ※ 국내대학 등에서 학위를 취득한 경우, 공적확인을 받지 않은 학위증 제출 허용(학위증 원본 및 사본 제출)
- ※ 단, 중국 교육부 운영 학력·학위인증센터 발행 학위 등 인증보고서가 발급되지 않는 중등직업학교 등 졸업자(학력인정기관 졸업자에 한함)에 대해서는 아래 기준에 따라 심사 자료 제출

구 분	심 사 기 준	비고	
KEJIEJIAN 전업학교	보통중등전문학교(普通中专) Regular Specialized Secondary Schools	① 온라인 발행 i) 지방 교육 당국 발행 졸업증명서* : 주중한국영사확인 필요 * 온라인에서 진위 여부 확인 가능한 경우만 인정 ② 오프라인 발행 ( '학교정보확인서' 제출 필수 (지정서식)) i) 지방 교육 당국 발행 졸업증명서 : 주중한국영사확인 필요 ii) 학교 자체 발행 졸업증명서 : 성교육청(시교육국) 확인 + 주중 한국영사확인 필요	택1
	직업고등학교(职业高中) Vocational High Schools		
	성인중등전문학교(成人中专) Adult Specialized Secondary Schools		
	기술공업학교(技工学校) Skilled Workers Schools		
기타 고졸학력 인정 학교	인적지원사회보장부 공식 홈페이지( <a href="http://www.mohrss.gov.cn/">http://www.mohrss.gov.cn/</a> )온라인 조회본 + 주중한국영사확인 * 온라인에서 진위 여부 확인 가능한 경우만 인정 학교 자체 발행 졸업증명서 + 주중한국영사확인 ※ 설립허가증(사업단위법인증서(事业单位法人证书) 또는 민판학교판학허가증(民办学校办学许可证)) 사본 제출 필수 (단, 학력 교육 과정만 인정, 공증 불필요)		

### 6-1. 전문학사 내지 박사과정 (D-2-1 내지 D-2-4)

【체류기간 2년 이하, 유효기간 3개월】

[☞ 목록으로 돌아가기 클릭!](#)

발급대상	초청인측 구비서류	신청인측 구비서류
<p>한국의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에 유학하고자 하는 자</p> <p>* 원칙적으로 인증대학 및 정부초청 장학생에 한함</p> <p>* 단, 2019. 10. 1.부터 인증대학이 아닌 일반대학에서 유학하고자 하는 자도 재외공관에 사증발급 신청 가능</p>	<p>① 표준입학허가서</p> <p>* 국립국제교육원 또는 국방부 초청 정부 장학생은 교육원장 또는 국방부장관이 발급한 초청장으로 대체</p> <p>*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된 것에 한함</p> <p>② 초청학교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p>	<p>① 공통서류</p> <p>② 최종학력 입증서류</p> <p>③ 표준입학허가서상 소요경비를 입증하는 은행잔고서 원본 및 사본</p> <p>* 부모명의일 경우 가족관계 입증서류 추가제출</p>

※ 불법체류율 1% 미만 인증대학인 경우, 공통서류와 표준입학허가서 또는 공통서류와 사증발급신청서만 제출

### 6-2. 학술연구기관 특정연구자 (D-2-5)

【체류기간 2년 이하, 유효기간 3개월】

[☞ 목록으로 돌아가기 클릭!](#)

발급대상	초청인측 구비서류	신청인측 구비서류
<p>학술연구기관에서 특정연구활동을 하려는 자</p>	<p>① 외국인연구생 확인서</p> <p>* 당관 홈페이지&gt;사증&gt;민원양식 참조</p> <p>*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된 것에 한함</p> <p>※ 연구생 확인서는 반드시 대학 총장 직인 날인 필요 (단과대학장, 대학내 연구장, 산학협력단장 명의로 발행된확인서 인정 불가)</p> <p>② 초청학교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p>	<p>① 공통서류</p> <p>② 최종학력 입증서류(석사학위 이상)</p> <p>③ 소요경비를 입증하는 은행잔고서(원본 및 사본) 또는 연구수당 지급확인서</p> <p>* 부모명의일 경우 가족관계 입증서류 추가제출</p>

### 6-3. 교환학생 (D-2-6)

【체류기간 2년 이하, 유효기간 3개월】

[☞ 목록으로 돌아가기 클릭!](#)

발급대상	초청인측 구비서류	신청인측 구비서류
<p>한중 대학간 체결한 대학생 교류협정에 따라 교환학생으로 선발된 자로서 아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p> <p>1) 4년제(정규 학사과정) 3년제인 경우 포함) 정규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한 학기 이상 수료한 자(재학생)</p> <p>2) 국내 초청대학에서 표준입학허가서가 발급된 자</p> <p>3) 과거 불법체류 등 범위반 사실이 없는 자</p>	<p>① 표준입학허가서</p> <p>*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된 것에 한함</p> <p>② 초청학교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p>	<p>① 공통서류</p> <p>② 한중 대학간 체결한 학생 교류협정서(MOU) 사본</p> <p>③ 1학기 이상 수학한 것을 증명하는 재학생명서 및 성적증명서</p> <p>④ 소속대학장이 발급한 추천서</p> <p>⑤ 표준입학허가서상 소요경비를 입증하는 은행잔고서 원본 및 사본 (소요경비 중 등록금은 제외)</p> <p>* 부모명의일 경우 가족관계 입증서류 추가제출</p>

※ 불법체류율 1% 미만 인증대학인 경우, 공통서류와 표준입학허가서 또는 공통서류와 사증발급신청서만 제출

#### 6-4. 일-학습연계 유학 (D-2-7)

【체류기간 2년 이하, 유효기간 3개월】

[☞ 목록으로 돌아가기 클릭!](#)

발급대상	초청인착 구비서류	신청인착 구비서류
정부초청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국내 대학의 전문학사 이상의 정규 학위과정에서 유학하고자 하는 자	① 표준입학허가서 *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된 것에 한함 ② 초청학교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① 공통 서류 ② 국립국제교육원장 발행 '정부초청 외국인 장학증명서'

※ 불법체류율 1% 미만 인증대학인 경우, 공통서류와 표준입학허가서 또는 공통서류와 사증발급신청서만 제출

#### 6-5. 방문학생 (D-2-8)

【체류기간 1년 이하, 유효기간 3개월】

[☞ 목록으로 돌아가기 클릭!](#)

발급대상	초청인착 구비서류	신청인착 구비서류
외국대학 정규 학위과정 재학생 (휴학생 포함)으로서 국내대학의 1년 이하 정규 학위과정에서 자비로 수학하고자 하는 유학생 ※ 학점이 부여되는 정규 학위과정(계절 학기 포함)대상으로 하며, 학점이 부여되지 않는 비교과 과정(특강, 아카데미 등)을 단기가 수강하고자 하는 경우 C3사증 발급	① 표준입학허가서 *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된 것에 한함 ② 초청학교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① 공통 서류 ② 소속(본국) 대학 재학 중임을 입증하는 서류(휴학포함) ③ 표준입학허가서상 소요경비를 입증하는 은행잔고서 원본 및 사본 * 부모명의일 경우 가족관계 입증서류 추가제출

※ 불법체류율 1% 미만 인증대학인 경우, 공통서류와 표준입학허가서 또는 공통서류와 사증발급신청서만 제출

#### 7. 한국어연수(D-4-1)

【체류기간 6개월 이하, 유효기간 3개월】

[☞ 목록으로 돌아가기 클릭!](#)

발급대상	초청인착 구비서류	신청인착 구비서류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 소지자로 유학(D-2) 사증 발급대상에 해당하는 교육기관(대학) 부설 어학원에서 어학연수를 하고자 하는 자	① 표준입학허가서 * 국립국제교육원 또는 국방부 초청 정부 장학생은 교육원장 또는 국방부장관이 발급한 초청장으로 대체 *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된 것에 한함 ② 교육기관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③ 교육기관에서 발급한 연수계획서 (강의시간표, 강사구성표, 연수 시설 등 내용 포함)	① 공통서류 ② 최종학력 입증서류 ③ 결핵진단서 ④ 표준입학허가서상 소요경비를 입증하는 은행잔고서 원본 및 사본 * 부모명의일 경우 가족관계 입증서류 추가제출

※ 불법체류율 1% 미만 인증대학인 경우, 공통서류와 표준입학허가서 또는 공통서류와 사증발급신청서만 제출

## 8. 기업투자(D-8)

【체류기간 1년 이하, 유효기간 3개월 / 복수: 2년 이내】

[☞ 목록으로 돌아가기 클릭!](#)

발급대상	초청인착 구비서류	신청인착 구비서류
<p><b>기업 투자(D-8-1)</b> 「외국인 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 투자기업인 대한민국 법인의 경영, 관리 또는 생산 기술분야에 종사하려는 필수 전문인력(임원, 상급관리자 전문가)으로서 국내에서 채용하는 자는 제외</p> <p>※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규칙」 지정 「지역본부(제9조의4)」 또는 「연구개발시설(제16조)」은 지정서 및 근무인력 명단(성명, 직책, 학력, 연구경력, 근무분야 등) 추가 제출</p>	<p>① 외국인 투자기업등록증 사본 ② 사업자 등록증 사본,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주주변동사항명세서 원본 ③ 3억원 미만 개인투자자 추가 제출 서류 - 자본금 사용내역 입증서류(국내계좌 입출금 등) - 사업장 존재 입증 서류(임대차 계약서 등) - 사업 실적 입증서류</p>	<p>① 사증발급신청서&lt;칼라사진 부착&gt; ② 여권, 신분증의 원본 및 사본 ③ 주재활동의 경우 (해외)본사 발행 파견 명령서(기간 명시), 재직증명서 ④ 투자자금(1억원이상, 본의명의 원칙*)도입관련 입증서류 - 현금: 본국의 외화반출허가신고서 (해당자), 송금확인증 등 - 현물: 현물출자완료 확인서(관세청장 발행), 세관 수입신고필증 사본 * 예외 인정 범위: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3억 이상의 경우 부모 및 배우자 부모 추가인정 ⑤ 결핵진단서</p>
<p><b>벤처 투자(D-8-2)</b> 지식재산권을 보유하는 등 우수한 기술력으로 「벤처 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벤처기업을 설립한 사람 중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의 대표자 또는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를 받은 기업의 대표자</p>	<p>없음</p>	<p>① 사증발급신청서&lt;칼라사진 부착&gt; ② 여권, 신분증의 원본 및 사본 ③ 사업자 등록증 사본,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 ④ 벤처기업확인서 또는 예비벤처기업확인서 ⑤ 지식재산권 등 기술력 입증서류 - 특허증(특허청), 실용신안등록증(특허청), 디자인등록증(특허청), 상표등록증(특허청), 저작권등록증(한국저작권위원회) 등 사본 - 기술신용보증기금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의 기술성 우수평가서 ⑥ 결핵진단서</p>
<p><b>기업 투자(D-8-3)</b> 「외국인 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 투자기업인 대한민국 국민(개인)이 경영하는 기업의 경영, 관리 또는 생산·기술·연구분야에 종사하려는 필수 전문인력으로서 국내에서 채용하는 자는 제외</p> <p>※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규칙」 지정 「연구개발시설」은 지정서 및 근무인력 명단(성명, 직책, 학력, 연구경력, 근무분야 등) 추가 제출</p>	<p>① 외국인 투자기업등록증 사본 ② 공동사업자인 국민의 사업자금(사용내역) 입증서류 ③ 공동사업자가 표시된 사업자등록증 사본, 공동사업자약정서 원본 ④ 3억원 미만 개인투자자 추가 제출 서류 - 자본금 사용내역 입증서류(국내계좌 입출금 등) - 사업장 존재 입증 서류(임대차 계약서 등) - 사업 실적 입증서류</p>	<p>① 사증발급신청서&lt;칼라사진 부착&gt; ② 여권, 신분증의 원본 및 사본 ③ 주재활동의 경우 파견 명령서(기간 명시), 재직증명서 ④ 투자자금(1억원이상, 본의명의 원칙*)도입관련 입증서류 - 현금: 본국의 외화반출허가신고서 (해당자), 송금확인증 등 - 현물: 현물출자완료 확인서(관세청장 발행), 세관 수입신고필증 사본 * 예외 인정 범위: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3억 이상의 경우 부모 및 배우자 부모 추가인정 ⑤ 결핵진단서</p>

<p><b>기술창업(D-8-4)</b>          국내에서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국외에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한 사람으로서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거나 이에 준하는 기술력 등을 가진 법인 창업자</p>	<p>없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사증발급신청서&lt;칼라사진 부착&gt;</li> <li>② 여권, 신분증의 원본 및 사본</li> <li>③ 사업자 등록증 사본,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li> <li>④ 학위증명서 사본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서</li> <li>⑤ 점수제 해당항목 입증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식재산권 보유(등록)자: 특허증, 실용신안등록증, 디자인등록증 사본</li> <li>- OECD국가 지식재산권 보유자: 입증서류 사본(아포스티유 확인 원칙, 미가입 국가 국민은 OECD국가 주재 대한민국 영사 확인)</li> <li>- 특허 등 출원자: 출원사실 증명서(특허청장 발행)</li> <li>- 창업이민종합지원시스템(OASIS) 해당항목 이수(수료, 졸업) 증서, 입상확인서, 선정공문 등</li> <li>- 기타 점수제 해당 항목 등</li> </ul> </li> <li>* 점수제 적용 면제자: 최근 2년 이내 K-Startup 그랜드 챌린지 참여자로서 사업화지원을 받고 있거나 지원을 받은 사실이 있는자</li> <li>⑥ 결핵진단서</li> </ul>
---	-----------	--

## 9. 구직(D-10)

### 9-1. 구직활동자(D-10-1) (2018년10월부터 시행)

**【체류기간 6개월 이하, 유효기간 3개월】**

[☞ 목록으로 돌아가기 클릭!](#)

<p>- 공통서류:</p>	<p>① 사증발급신청서&lt;칼라사진(3x4cm)1매 부착&gt;                  ② 여권, 신분증 원본 및 사본                  ③ 구직 또는 연수활동계획서(월 단위로 작성) *구직활동계획서는 당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하여 작성                  ④ (외지호구자) 산동성 거주사실 입증자료                  ⑤ 결핵진단서                  ⑥ 재정능력 입증서류 ( '22.3.28~)                  * 연도별 '1인 가구 주거급여 기준액 x 체류개월 수 ' 이상 금액이 예치된 은행잔고 증명서 등</p>
<p>- 참고사항:</p>	<p>점수제 구직비자의 점수 총점이 80점 이상인 경우에 한해 가족동반(F-3) 사증 발급                  (점수제 적용 면제자도 동일적용)</p>

발급대상	신청인측 구비서류
<p>국내에서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홍행(E-6), 특정활동(E-7) 자격에 해당하는 분야에 취업하기 위해 연수나 구직활동 등을 하려는 자</p> <p><b>* 단, 예술홍행(E-6)자격 중 유흥업소 등의 홍행활동(E-6-2)은 제외하고, 순수예술 및 스포츠분야만 허용</b></p> <p>○ 발급기준 : 별첨 '구직비자 배점표' 에 따라 총점 190점 중 기본항목 20점 이상이면서 총 득점 60점 이상인자</p> <p>- 다만, 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구직(D-10)체류자격 변경 신청 시 점수제 적용 면제 (국내대학 출신 한국어능력 우수자)</p> <p>① 기본항목 : 연령 최대 20점 / 학력 최대 30점                  ② 선택항목                  - 취업 경력 최대 15점                  - 국내 유학 경력 최대 20점                  - 국내 연수 경력 5점                  - 한국어 능력 최대 20점                  ③ 가점 최대 20점                  ④ 감점 최대 30점                  예) ①+②+③-④ = 총 득점 60이상 신청가능</p> <p>(점수제 면제 대상자: 국내대학 출신 한국어능력 우수자) ( '22.3.28~)                  국내 정규 대학*에서 전문학사 이상 학위 취득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로 ①TOPIK 4급 이상 유효 성적표 소지자 ②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중간평가 합격자 또는 ③사전평가 5단계 배정자</p> <p>*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부터 4호에 해당하는 대학</p> <p>☞ <a href="#">※점수제 구직비자(D-10-1)배점표 보기</a> ☞ 클릭</p>	<p>① 공통서류                  ② 학력증명서(아래 중 1가지)                  - 졸업증명서                  - 학위증 원본 및 사본                  - 학위취득 증명서                  ③ 각 항목에 대한 입증자료</p> <p>※ 한국어 능력 입증자료                  토픽(TOPIK)/사회통합프로그램(KIIP)</p> <p>- 2급/2단계이상 : 5점                  - 3급/3단계이상 : 10점                  - 4급/4단계이상 : 15점                  - 5급/5단계이상 : 20점</p> <p style="text-align: center;"><b>&lt;점수제 면제 대상자&gt;</b></p> <p>① 공통서류                  ② 국내 정규 대학 전문학사 이상 학위증(또는 졸업증명서)                  ③ TOPIK 4급 유효 성적표, 사회통합프로그램 중간평가 합격증 또는 사전평가 점수표(81점 이상)</p>

## 9-2. 기술창업준비자(D-10-2)

【체류기간 6개월 이하, 유효기간 3개월】

[☞ 목록으로 돌아가기 클릭!](#)

<p>- 공통서류:</p>	<p>① 사증발급신청서&lt;칼라사진(3x4cm)1매 부착&gt;                  ② 여권, 신분증 원본 및 사본                  ③ 학사(국내 전문학사) 학위이상 학력증명서                  ④ 기술창업계획서                  ⑤ (외지호구자) 산동성 거주사실 입증자료                  ⑥ 결핵진단서                  ⑦ 재정능력 입증서류 ( '22.3.28~)                  * 연도별 '1인 가구 주거급여 기준액 x 체류개월 수 ' 이상 금액이 예치된 은행잔고 증명서 등</p>
----------------	--

발급대상	신청인측 구비서류
<p><b>학사(국내 전문학사)이상의 학위를 소지(학위 수여예정자 포함)하고 지식재산권이나 이에 준하는 기술력을 바탕으로 창업 준비를 하려는 자로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b></p> <p>1) 대한민국 지식재산권 중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을 보유하고 있거나 출원중인 자</p> <p>2) 법무부·중기부 장관이 공동 지정한 '글로벌창업이민센터'에서 시행하는 창업이민종합지원시스템(OASIS)의 교육과정 참여 중이거나, 최근 3년 이내 해당 교육과정 일부 또는 전부를 이수한 사실이 있는자(단, 교육과정 이수 후 3년이 경과한 자는 제외)</p> <p>3) OECD 지적재산권 보유자 ( '22.3.28~)</p> <p>4) 상기 이외의 경우: 기술창업계획서를 당관에 제출하여 전공과 창업직종과의 연관성, 창업 준비에 소요되는 체재경비 등을 종합 심사하여 타당한 경우</p>	<p><b>1) 지식재산권 보유자</b></p> <p>① 공통서류                  ② 지식재산권 등록증 또는 특허증 출원사실증명서                  * 특허증·실용신안등록증·디자인등록증 사본</p> <p><b>2) 창업이민종합지원시스템 이수(참여)자</b></p> <p>① 공통서류                  ② 창업이민종합지원시스템 교육과정 이수증 또는 교육참여확인서</p> <p><b>3) OECD 지적재산권 보유자</b></p> <p>① 공통서류                  ② OECD 국가 지식재산권 보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공적 서류</p> <p><b>4) 상기 이외의 경우</b></p> <p>① 공통서류                  ② 전공과 창업직종과의 연관성 입증서류                  ③ 창업준비에 소요되는 체재경비 보유 입증서류</p>

## 10. 회화지도(E-2-2) ※ 원어민 중국어보조교사(CPIK)

【체류기간 계약기간+1개월(최대 13개월), 유효기간 3개월】

[☞ 목록으로 돌아가기 클릭!](#)

발급대상	초청인측 구비서류	신청인측 구비서류
<p>교육과학기술부 장관 또는 시도 교육감 주관으로 모집·선발되어 초·중·고등학교에서 회화 지도활동을 하려는 자</p>	<p>① 원어민 중국어보조교사 합격통지서                  ② 시도 교육감과 체결한 고용계약서</p>	<p>① 사증발급신청서&lt;칼라사진 부착&gt;                  ② 여권, 신분증 원본 및 사본                  ③ 결핵진단서</p>

## 11. 방문동거(F-1)

### 11-1. 결혼이민자의 부모등 가족(F-1-5) (2022.1.3. 부터 시행)

**【체류기간 90일 이하, 유효기간 3개월】**

[☞ 목록으로 돌아가기 클릭!](#)

발급대상	초청인측 구비서류	신청인측 구비서류
<p><b>(자녀 양육지원 목적)</b> 결혼이민자 또는 한국인 배우자가 임신 하거나 돌봄이 필요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어 입국이 필요한 ①결혼이민자의 모 또는 모, ②(결혼이민자의 부모 모두 사망 또는 질병, 고령의 이유로 국내에 입국할 수 없는 경우) 「민법」상 성년인 형제자매, 및 전혼관계 출생자녀</p> <p>- 다만, 형제자매, 전혼관계 출생자녀에게 미성년 자녀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초청가능</p> <p>· <b>[임신 또는 돌봄]</b> 신청일 기준, 자녀가 만 9세가 되는 해의 9월 말까지 초청가능(자녀 1명당 1인(부모동시 순차 초청가능). 단, 취학의무 불이행시 초청제한)</p> <p>· <b>[한부모 또는 다자녀(미성년 자녀 3명이상)]</b> 신청일 기준, 자녀가 만12세가 되는 해의 9월 말까지 초청가능(자녀 1명당 1인(부모 동시 순차초청가능). 초청횟수제한 무)</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초청인의 신분증 사본</li> <li>② 초청장(지정서식)</li> <li>③ 신원보증서(지정서식, 보증기간: 입국일로부터 3년)</li> <li>④ 불법체류·취업 방지 서약서(지정서식)</li> <li>⑤ 거주지 확인서류(임대차계약서 등)</li> <li>⑥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모든 자녀명의 가족관계 증명서</li> <li>⑦ (임시 또는 입양에 해당시) 산모수첩, 입양관계증명서 등</li> <li>⑧ (영주자격 등록외국인인 경우) 한국인 배우자 명의 6번 서류</li> <li>⑨ (한부모 가정의 경우) 자녀 명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前배우자의 혼인관계증명서</li> <li>⑩ (자녀가 취학연령의 경우) 재학증명서</li> </o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사증발급신청서&lt;칼라사진 부착&gt;</li> <li>② 여권, 신분증의 원본 및 사본</li> <li>③ 가족관계 입증서류(호구부의 원본 및 사본 등)</li> <li>④ (부모 이외의 가족) 부모 입국 불가사유 및 입증서류</li> <li>⑤ 결핵진단서</li> </ol>
<p><b>(중증질환 또는 장애인 지원 목적)</b> 결혼이민자, 한국인 배우자, 자녀 중 '중증질환' 또는 '중증장애*' 가 있어 입국이 필요한 ①결혼이민자의 부 또는 모, ② 「민법」상 성년인 형제자매 및 전혼관계 출생자녀</p> <p>· <b>[중증질환자]</b> 보건복지부 고시 '중증질환(중증난치질환)' 또는 선정특례 대상 해당자</p> <p>· <b>[중증장애인]</b>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의 '종합장애 정도'에 '중증장애' 또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로 기재된 자</p> <p>*자녀 1명당 1인(부모 동시·순차 초청가능) 초청 가능. 초청 횟수제한 무</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초청인의 신분증 사본</li> <li>② 초청장(지정서식)</li> <li>③ 신원보증서(지정서식, 보증기간: 입국일로부터 3년)</li> <li>④ 불법체류·취업 방지 서약서(지정서식)</li> <li>⑤ 거주지 확인서류(임대차계약서 등)</li> <li>⑥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모든 자녀명의 가족관계 증명서</li> <li>⑦ (임시 또는 입양에 해당시) 산모수첩, 입양관계증명서 등</li> <li>⑧ (영주자격 등록외국인인 경우) 한국인 배우자 명의 6번 서류</li> <li>⑨ (한부모 가정의 경우) 자녀 명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前배우자의 혼인관계증명서</li> <li>⑩ (중증질환) '중증질환(중증난치질환)' 또는 선정특례 사실이 기재된 입증서류</li> <li>⑪ (중증장애) 장애인증명서 등</li> </o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사증발급신청서&lt;칼라사진 부착&gt;</li> <li>② 여권, 신분증의 원본 및 사본</li> <li>③ 가족관계 입증서류(호구부의 원본 및 사본 등)</li> <li>④ 결핵진단서</li> </ol>

※ (초청자) 한국인 배우자 또는 국적결혼이민 영주(F-5-2) 자격을 취득한 결혼이민자

※ 다만, 한부모 결혼이민자는 결혼이민 영주(F-5-2) 또는 한국 국적 취득 여부와 상관없이 본국 가족 초청 가능

## 11-2. 미성년 유학생의 부 또는 모(F-1-13)

【체류기간 자녀의 체류기간 범위 내(최대 1년), 유효기간 3개월】 [☞ 목록으로 돌아가기 클릭!](#)

발급대상	초청인측 구비서류	신청인측 구비서류
<p>고등학교 이하의 교육기관에 입학 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미성년 외국인 유학생과 동반 체류하려는 부 또는 모</p> <p>* 동반 체류허용 인원 1명 가능 * 아래 해당자는 제외</p> <p>① 최근 5년 이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또는 통고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② 강제퇴거 또는 출국명령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p>	없음	<p>① 사증발급신청서&lt;칼라사진 부착&gt; ② 여권, 신분증의 원본 및 사본 ③ 호구부의 원본 및 사본 ④ 입학허가서 또는 재학증명서 등 입학(예정)증명서류 ⑤ 결핵진단서 ⑥ 가족관계 입증서류 * 호구부, 출생의학증명서에 한함 ⑦ 재정능력 입증서류</p> <p>- 기준 이상 금액*의 원천징수영수증, 부동산 소유 증명, 부동산거래계약서, 예금잔고 증명서 등 <b>* 부부의 소득이나 자산은 합산가능</b></p> <p>*연간 소득이 전년도 GNI 이상이거나 자산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중위수준 이상</p>

## 12. 거주(F-2)

### 12-1. 국민의 미성년 외국인자녀(F-2-2)

【체류기간 90일 이하, 유효기간 3개월】

[☞ 목록으로 돌아가기 클릭!](#)

발급대상	초청인측 구비서류	신청인측 구비서류
<p>국민의 미성년 외국인자녀</p> <p>* 한·중 복수국적자 제외</p> <p>*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가 국적 취득전 외국인배우자의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미성년자녀의 경우 : - 산동성 호구부 및 신분증 소지자에 한하여 신청 가능</p>	<p>① 대한민국 국민인父 또는 母의 초청장 ② 위 초청자의 신원보증서 * 초청자에게 배우자가 있는 경우 그 배우자의 신원보증서도 함께 제출 ③ 기본증명서(상세) ④ 가족관계증명서(상세) ⑤ 혼인관계증명서(상세) ⑥ 주민등록증 사본 ⑦ 초청자와 피초청자의 관계 및 양육권 보유관계 입증서류 * 예: 출생의학증명서, 유전자검사 확인 서류, 이혼판결서 등 * 양육권 보유관계를 입증할 수 없는 경우 피초청자와 동일한 국적을 보유한 피초청자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친권자나 후견인이 없는 경우 친권자나 후견인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공적 서류)</p>	<p>① 사증발급신청서&lt;칼라사진 부착&gt; ② 여권, 신분증의 원본 및 사본 ③ 호구부의 원본 및 사본 ④ 결핵진단서 ⑤ 가족관계 입증서류 * 예: 친족관계진술서, 사진 등</p>

**12-2. 영주자격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자녀 (F-2-3)**  
**【체류기간 1년 이하, 유효기간 3개월】**

[☞ 목록으로 돌아가기 클릭!](#)

발급대상	초청인측 구비서류	신청인측 구비서류
<p>영주자격 허가를 받은 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가 거주목적으로 방한하고자 하는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초청인이 국민 또는 영주자격(F-5)을 가진 사람의 배우자로서 대한민국 영주자격을 취득한 경우 영주자격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경과 이후 중국인 배우자 및 미성년자녀 초청 가능</li> <li>* 영주자격자의 배우자 사증이 불허된 경우는 6개월이 경과해야 재신청 가능(다만, 사증 신청인이 임신 또는 출산한 경우 등 한국에 입국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 인정)</li> <li>* 초청인의 소득 및 재산의 환산액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초청인과 세대를 같이 하는 직계가족의 소득과 재산을 활용할 시, 「외국인 배우자 초청인의 가족소득현황 진술서」(홈페이지&gt;사증&gt;민원양식)제출 바람</li> </u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F-2-3 전용 초청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관 홈페이지에서 출력하여 작성</li> </ul> </li> <li>② <u>외국인등록증 사본</u></li> <li>③ <u>호구부의 원본 및 사본</u></li> <li>④ 신원보증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관 홈페이지에서 출력하여 작성</li> <li>* 보증기간: 입국일로부터 2년 이상</li> </ul> </li> <li>⑤ 범죄경력증명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래의 경우 제출 면제</li> <li>- 초청자(영주자격자)가 영주자격 변경 시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하였거나 제출 면제 대상인 경우 (단, 영주자격 변경 후 해외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한 경우, 해외 체류기간 동안의 체류국 정부가 발행한 범죄경력증명서 제출해야 함)</li> <li>- 고액투자자(F-5-5), 첨단박사학위 소지자(F-5-9), 국내박사학위 소지자(F-5-15), 특정분야 우수인재(F-5-11), 특별공로자(F-5-12)인 경우</li> <li>- 화교 2세 등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후 계속 거주한 사람(F-5-8, F-5-20)인 경우 (단, 해외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한 경우에는 계속 체류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해외 체류기간 동안의 체류국 정부가 발행한 범죄경력 증명서 제출해야 함)</li> </ul> </li> <li>⑥ 건강진단서(6개월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병원급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발급된 것</li> <li>* 일반항목 이외 정신질환, 성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등이 포함되어야 함</li> </ul> </li> <li>⑦ 소득금액증명(국세청 발급)</li> <li>⑧ 신용정보조회서(한국신용정보원 발급)</li> <li>⑨ 국내 거주 입증 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동산등기부등본(자가인 경우) 또는 임대차계약서(임대인 경우)</li> <li>* 주거공간은 초청인 또는 초청인과 세대를 같이 하는 직계가족 명의로 소유 또는 임차한 곳이어야 함[다만, 소속기관이 소유 또는 임차하여 제공한 관사, 사원아파트 등도 인정]</li> </ul> </li> </ol> <p style="text-align: center; background-color: #e0e0e0;"><b>재정(소득)입증 추가서류(택일)</b></p> <p style="text-align: center;">1. 근로소득 활용 시</p>	<p style="text-align: center;"><b>&lt;배우자인 경우&gt;</b></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사증발급신청서&lt;칼라사진 부착&gt;</li> <li>② 여권, 신분증의 원본 및 사본</li> <li>③ 호구부의 원본 및 사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초청인과 혼인사실 기재된 호구부</li> </ul> </li> <li>④ 결혼배경진술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관 홈페이지에서 출력하여 작성</li> </ul> </li> <li>⑤ 결혼증 원본 및 사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혼의 경우: 이혼증 또는 이혼판결인 사조해서(전배우자 사망한 경우 사망의 학증명서)</li> </ul> </li> <li>⑥ 참고사진 원본 및 사본(결혼사진 등)</li> <li>⑦ 범죄경력증명서(3개월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국 內 모든 범죄경력(호구지 및 거주지)이 포함되어야 하며, 공증 및 인증 필요. (단, 범죄기록증명서에 QR코드로 문서의 진위여부 판단이 가능하면 공증 및 인증 불요)</li> </ul> </li> <li>⑧ 건강진단서(3개월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出入境检验检疫局에서 발급한 健康检查证 원본 및 사본</li> </ul> </li> <li>⑨ 출생의학증명서 원본 및 사본 (초청인과 신청인 사이에 자녀가 있는 경우)</li> </ol> <p style="text-align: center;"><b>&lt;미성년 자녀인 경우&gt;</b></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사증발급신청서(칼라사진 부착)</li> <li>② 여권, 신분증의 원본 및 사본</li> <li>③ 초청인(영주자격자)의 미성년 자녀임을 입증하는 서류(출생의학증명서, 호구부 등 원본 및 사본)</li> </ol>

	① 원천징수 영수증 (각 근무처에서 발급) ② 재직증명서 (각 근무처에서 발급) ③ 기타 근로소득 입증서류 (통장사본, 월급명세서 등)	
	<b>2. 사업소득 활용 시</b>	
	① 사업자등록증명원(국세청) ② 기타 사업소득 입증서류 (농지원부, 경작사실확인서, 농어업 사업확인서 등)	
	<b>3. 기타소득, 재산 활용 시</b>	
	① 관련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 초청인과 신청인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등은 소득요건 적용 면제
- ※ 신청일 기준 과거 1년간의 본인 또는 세대를 같이 하는 직계가족\* 및 배우자(피초청인)의 국내 소득합계\*\*(세전)가 한국은행고시 전년도 일인당 국민총소득 GNI 이상일 것, 단, 본인 포함 세대를 같이하는 직계가족의 수가 3인 이하인 경우 GNI 70% 이상이면 인정
- 2022년 GNI(1인당 총소득) : 40,482,000원 단, 동거가족 수가 3인 이하인 경우 GNI 70%이상 : 28,337,400원
- \* 직계가족 : 초청인의 조부모, 부모, 자녀, 손자 등을 의미하며, 형제·자매는 제외
- \*\* 소득합계는 근로소득+사업소득(프리랜서, 농림수산업소득 포함)+부동산 임대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연금소득의 합계로 하되, 이외 비정기적 소득은 제외함

### 13. 동반(F-3)

【체류기간 90일 이하, 유효기간 3개월】

[👉 목록으로 돌아가기 클릭!](#)

발급대상	초청인척 구비서류	신청인척 구비서류
<p>D-1, D-5, D-6~D-9, E-1~E-7 자격에 해당하는 등록외국인의 배우자 및 미성년자녀로서 미혼인 자</p> <p>* D-5 자격의 동반사증 경우 국내에 지사가 개설되어 있어야 함</p>	<p>① 초청장 ② 외국인등록증 사본 ③ 재직증명서 ④ 납부내역증명서 * 납세자에 한함 ⑤ 가족동반에 따른 독립된 주거지 입증 필요(임대차 계약서 등)</p>	<p>① 사증발급신청서&lt;칼라사진 부착&gt; ② 여권, 신분증의 원본 및 사본 ③ 호구부의 원본 및 사본 ④ 결핵증명서 ⑤ 가족관계 입증서류 * 결혼증, 사진 등</p>
<p>국내 대학의 학사과정이상에서 유학(D-2) 자격으로 6개월 이상 체류 중인 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로서 미혼인 자</p> <p>* 단, 체류기간이 2년 이내인 D-2-1(전문학사)는 인도적 사유가 없는 한 초청 제한</p>	<p>① 초청장 - 배우자의 경우 취업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 기재 ② 외국인등록증 사본 ③ 재직증명서 ④ 납부내역증명서 * 납세자에 한함 ⑤ 가족동반에 따른 독립된 주거지와 충분한 재정능력 입증 필요 - 동반가족이 있는 경우 인증대 재학여부와 관계없이 재정능력 입증이 필요하며, 초청자의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체류허가 - 동반가족 1인당 체류경비 추가로 입증해야 함. * 1인기준 : 월 698,677원 * 2인기준 : 월 1,189,640원 * 3인기준 : 월 1,538,978원 * 동반가족이 3인 이상인 경우, 학비 외에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의 50%이상에 해당하는 체류경비를 국내에 보유하고 있음을 입증해야 함.</p>	<p>① 사증발급신청서&lt;칼라사진 부착&gt; ② 여권, 신분증의 원본 및 사본 ③ 호구부의 원본 및 사본 ④ 결핵증명서 ⑤ 가족관계 입증서류 * 결혼증, 사진 등</p>

## 14. 결혼이민(F-6)

### 14-1. 국민의 배우자(F-6-1)

**【체류기간 90일 이하, 유효기간 3개월】**

[☞ 목록으로 돌아가기 클릭!](#)

**【안내사항】** 국민의 배우자(F-6-1) 사증은 대행사를 통해서 신청 불가하며, 반드시 신청인 본인이 직접 비자신청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비자신청센터에서는 신청인이 한국인 배우자에 대한 정보(건강상태, 범죄경력 유무, 소득상태 등)를 인지하고 있는지 확인한 후 사증을 접수합니다.

발급대상	초청인측 구비서류	신청인측 구비서류
<p>한국인과 결혼하여 한국에서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된 중국인 배우자가 한국인 배우자와 거주목적으로 방한하고자 하는 자</p> <p>* 초청인이 국민의 배우자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국적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경과 이후 중국인 배우자 초청 가능</p> <p>* 결혼이민 사증이 불허된 경우는 6개월이 경과해야 재신청 가능 (다만, 사증 신청인이 임신 또는 출산한 경우, 사증발급 신청일 기준 과거 1년 이전에 혼인신고 하고 6개월 이상 계속해서 결혼 동거한 사실이 있는 경우로서 한국에 입국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 인정)</p> <p>* 초청인이 소득 및 재산의 환산액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초청인과 세대를 같이 하는 직계가족의 소득과 계산을 활용할 시, 「외국인 배우자 초청인의 가족 소득현황 진술서」(홈페이지&gt;사증&gt;민원양식)제출 바람</p>	<p>① 외국인 배우자 초청장 * 당관 홈페이지 양식 다운로드</p> <p>② 가족관계입증서류 (필수) - 기본증명서(상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혼인관계증명서(상세)</p> <p>③ 주민등록증 사본</p> <p>④ 주민등록등본 원본</p> <p>⑤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이수증 * 출입국관리사무소 발급 * 초청장에 이수번호 기재 시 제출 불요</p> <p>⑥ 건강진단서 (6개월 이내) * 병원급 의료기관, 보건소,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 제3조에 따른 신체검사 실시 검진기관에서 발급 * 일반항목 이외 정신질환, 성병 및 후천성 면역결핍증 등이 포함되어야 함</p> <p>⑦ 신원보증서 * 당관 홈페이지 양식 다운로드 * 보증기간은 입국일로부터 2년 이상</p> <p>⑧ 신용정보조회서 * 크레딧포유 (<a href="http://www.credit4u.or.kr">www.credit4u.or.kr</a>) 발급</p> <p>⑨ 국내 거주 입증 서류 * (부동산등기부등본(자가인 경우) 또는 임대차계약서(임대인 경우))</p> <p>⑩ 소득금액증명 (필수) * 국세청 홈택스 (<a href="http://www.hometax.go.kr">www.hometax.go.kr</a>) 발급 * 소득금액증명으로 소득요건이 불충족한 경우 아래 소득요건으로 추가 제출 가능</p> <p>㉠ 근로소득 활용시 - 원천징수영수증 (필수) -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 기타 근로소득 입증서류 (통장사본, 월급명세서 등)</p> <p>㉡ 사업소득 활용시(임대소득, 이자소득 등 포함) - 사업자등록증 사본 (필수) - 소득입증 서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표준재무제표증명, 임대차계약서 등</p> <p>㉢ 가족소득 활용시 - 외국인 배우자 초청인의 가족소득 현황 진술서 (당관 홈페이지 양식 다운로드) - 소득 입증서류</p> <p>* 초청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직계가족의 소득만 인정</p>	<p>① 사증발급신청서&lt;칼라사진 부착&gt;</p> <p>② 외국인 배우자의 결혼배경 진술서 * 당관 홈페이지 양식 다운로드</p> <p>③ 여권, 신분증의 원본 및 사본</p> <p>④ 호구부 원본 및 사본 * 혼인사실 기재된 호구부</p> <p>⑤ 결혼증 원본 및 사본(중국 내 혼인 신고 한 경우)</p> <p>⑥ 과거 혼인이력 확인 서류 * 前배우자 사망한 경우: 사망의확증명서 * 재혼의 경우: 이혼증 또는 이혼판결문</p> <p>⑦ 출생의확증명서 원본 및 사본 * 부부사이에 출생자녀가 있는 경우</p> <p>⑧ 범죄경력증명서 (3개월 이내) -중국 내 모든 범죄경력 (호구지 및 거주지) 이 포함되어야 하며, 공증 및 인증필요. (단, 범죄기록증명서에 QR 코드로 문서의 진위여부 판단이 가능 할 경우 공증 및 인증 불요)</p> <p>⑨ 건강진단서 (6개월 이내) * 出入境检验检疫局에서 발급한 健康检查证 원본 및 사본 단, 健康检查证으로 제출하는 경우 정신질환 항목이 포함되지 않으므로 별도 검사 필요</p> <p>⑩ 결핵진단서 (3개월 이내) * 신청인이 ⑨번 항목의 건강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별도의 결핵진단서 제출 불요 단,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이수 면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건강진단서 제출이 면제되므로 결핵진단서 제출 필요</p> <p>⑪ 한국어 구사요건 서류 (택일) - 한국어능력시험(TOPIK) 1급 이상 성적증명서 -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2단계 이상 이수증 * 유효기간 : 2년 - 한국어 관련 대학(원) 학위증 - 지정교육기관(세종학당 등) 초급과정 이수증 * 이수시간 : 120시간 이상 - 외국국적동포 입증서류 - 한국에서 과거 1년 이상 연속하여 체류한 출입국기록 등</p> <p>⑫ 교제입증서류</p>
	<p><b>※ 상기 방법으로 지정(소득)입증이 어려운 경우 추가 입증방법</b></p>	

	① 지역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최근 1년) ② 지역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 * 국민건강보험공단(m.nhis.or.kr) 발급
	* 결혼사진, 교제사진, SNS 대화내역 등

※ 초청인의 과거 1년간 소득(세전)이 아래 표의 소득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구분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소득기준	19,560,510	25,168,206	30,726,480	36,147,090	41,442,024	46,683,552

※ 8인 가구 이상 소득기준 : 가구원 추가 1인당 5,241,528원씩 증가

※ 초청인의 소득 및 재산의 환산가액이 위 요건 미충족시 아래의 경우 소득요건 활용 가능

- ① 초청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직계가족의 소득 또는 재산이 위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 ② 외국인 배우자의 대한민국 내 과거 1년간 소득 또는 대한민국에 있는 재산이 위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 <소득요건 적용의 면제 대상자>

- 초청인과 외국인 배우자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거나 임신 후 20주가 지난 경우
- 부부가 1년 이상 외국에서 동거하여 과거 1년간 국내소득이 없는 경우
  - ※ 부부가 함께 국내 입국하거나, 한국인 배우자의 입국일로부터 1년 이내 외국인 배우자가 사증발급 신청 시 적용

#### <한국어 구사요건 적용의 면제 대상자>

- 초청인이 외국인 배우자의 모국어가 공용어로 사용되는 국가에서 과거 1년 이상 연속하여 거주하여 외국인 배우자의 모국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경우
- 초청인이 귀화자로서 귀화하기 전 국적국의 언어가 외국인 배우자의 모국어와 동일하여 외국인 배우자의 모국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경우
- 초청인과 외국인 배우자가 제3국 언어가 공용어로 사용되는 국가에서 과거 1년 이상 연속하여 거주하여 그 제3국 언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경우
  - ※ 초청인이 외국인 배우자와 의사소통이 가능한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필요시 언어 구사능력 인터뷰 실시 가능
- 초청인과 외국인 배우자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거나 임신 후 20주가 지난 경우

####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이수 면제대상>

- 외국인 배우자의 국가에서 6개월 이상 또는 제3국에서 유학, 파견근무 등을 위해 장기 사증으로 계속 체류하면서 결혼 상대방과 교제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
- 외국인 배우자가 장기체류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하여 91일 이상 합법체류하면서 초청인과 교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
- 임신·출산 그 밖에 인도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 ※ 교제사실은 초청장에 기재된 교제경위 및 신청인이 제출한 사진, 이메일, 인우보증서 등의 자료와 출입국 기록 및 인터뷰 등을 통해 확인
  - ※ 이수 면제대상의 경우 각 면제사유에 대한 입증서류를 제출해야하며 쌍방의 범죄경력증명서, 건강진단서 제출 불요
  - ※ 이수증 유효기간은 이수일로부터 5년

#### <자녀출산·임신으로 인한 요건 면제 관련 친자관계 확인(DNA) 절차>

- 자녀출산·임신으로 인해 소득·한국어 구사·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이수 등 요건 면제를 요청할 경우, 아래 '친자관계 확인필요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친자관계 확인(DNA) 필요(DNA 검사에 동의하지 않거나 검사 결과를 제출하지 않는 사람은 요건 면제 대상에서 제외)
- 친자관계 확인필요 대상(아래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 ① 외국인 배우자가 과거 출국명령 또는 강제퇴거 명령을 받은 경우
  - ② 최근 1년 이내 외국인 배우자가 결혼이민(F-6-1) 사증발급 불허전력이 있는 경우
  - ③ 부부의 나이 차이가 20세 이상인 경우
  - ④ 사증발급 신청일 기준 부부의 동거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 ※ 다만, 임신 후 사증신청 시까지 외국인 배우자를 5회 이상 방문하거나, 임신 후 외국인 배우자와 함께 거주한 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는 제외(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을 방문한 경우도 인정)
  - ⑤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가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경우
  - ⑥ 그 밖에 재외공관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친자관계 확인 절차
  - 재외공관에서 DNA 감식시료 채취 후 대검찰청에 DNA 검사 의뢰
    - ▶ 대검찰청 의뢰 결과를 기다릴 수 없는 급박한 사정이 있고, 신청인이 자비로 검사비용을 부담하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 (아래 중 택1)
      - ① 중국 내 공인된 DNA 검사 기관 중 재외공관장이 지정한 기관에서 DNA 검사 후 결과 제출
      - ② 관련법에 따른 기관 중 KOLAS 공인시험기관으로 인정받은 기관에서 DNA 검사 후 결과 제출
- ※ 임신한 경우에는 임신 20주 이후 '심사면제 요청서'(양식 첨부)를 제출할 경우 해당 요건 심사 면제(심사면제 요청서 제출만으로 요건 면제하나, 자녀출생 후 친자관계 확인결과 친자가 아닌 것으로 드러나거나, 친자관계 확인을 거부할 경우 국내체류 불허)

## 14-2. 국민의 배우자(F-6-1) 재신청자

【체류기간 90일 이하, 유효기간 3개월】

[☞ 목록으로 돌아가기 클릭!](#)

발급대상	초청인측 구비서류	신청인측 구비서류
<p>1. 과거 국민의 배우자 사증을 취득하고 정상적으로 체류한 자</p> <p>2. 체류자격 변경 등을 통해 결혼 체류자격(F-2)으로 체류하던 자가 한국 정상 체류 후 귀국하여 체류기간이 초과된 경우</p> <p>* 동일한 배우자와 혼인관계가 지속되고 있는 경우에 한함</p>	<p>① 혼인관계증명서(상세)</p> <p>② 주민등록등본</p> <p>③ 신원보증서</p>	<p>&lt;공통서류&gt;</p> <p>① 사증발급신청서&lt;칼라사진 부착&gt;</p> <p>② 여권, 신분증의 원본 및 사본</p> <p>③ 결핵진단서</p> <p>&lt;추가제출서류&gt;</p> <p>(유효기간 초과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효기간 초과된 F-6 사증 사본</li> <li>- 사유서</li> </ul> <p>(체류기간 만료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국인등록증 원본 및 사본</li> <li>- 사유서</li> </ul>

## 14-3. 자녀 양육자(F-6-2)

【체류기간 90일 이하, 유효기간 3개월】

[☞ 목록으로 돌아가기 클릭!](#)

발급대상	초청인측 구비서류	신청인측 구비서류
<p>F-6-1에 해당하지 않으나 국민과의 혼인관계(사실상의 혼인관계 포함)에서 출생한 미성년자를 국내에서 양육하려는 부 또는 모</p>	<p>없음</p>	<p>① 사증발급신청서&lt;칼라사진 부착&gt;</p> <p>② 여권, 신분증의 원본 및 사본</p> <p>③ 호구부의 원본 및 사본</p> <p>④ 가족관계 입증서류(출생의학증명서, 유전자검사 확인서류 등)</p> <p>⑤ 자녀양육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양육권 내용이 포함된 판결문</li> <li>* 자녀의 5촌이내 한국인친척(부 또는 모 포함)의 양육입증확인서 등 기타 이에 준하는 서류</li> </ul> <p>⑥ 出入境检验检疫局에서 발급한 健康检查证 원본 및 사본</p>

# 복 수 사 증

## 15. 외교(A-1), 공무(A-2-1 ~ A-2-4)

**【체류기간 재임기간, 유효기간 3년】**

[👉 목록으로 돌아가기 클릭!](#)

발급대상	초청인측 구비서류	신청인측 구비서류
<p><b>1. 외교(A-1)</b> 외교관 여권을 소지하고 외교 업무를 수행하려는 자와 동반가족(배우자, 미성년자녀, 부모, 배우자의 부모)</p> <hr/> <p><b>2. 공무(A-2)</b> 공무 여권을 소지하고 공무활동을 하려는 자와 동반가족(배우자, 미성년자녀, 부모, 배우자의 부모)</p> <p><b>※ 입국목적 및 근무처별 분류</b></p> <p>① A-2-1(외국정부) : 주한공관, 외국정부를 대표하는 국내 소재 정부기구, 국내 지자체 등</p> <p>② A-2-2(국제기구) : 국제기구</p> <p>③ A-2-3(유엔사) : 유엔군사령부</p> <p>④ A-2-4(기타공무) : 국제회의, 양자회의 등 목적 방문</p>	없음	<p>① 사증발급신청서&lt;칼라사진 부착&gt;</p> <p>② 여권, 신분증의 원본 및 사본</p> <p>③ 재직증명서</p> <p>④ 중국 외교부의 협조공문</p> <p>⑤ 동반가족의 경우 가족관계 입증서류(호구부 등)</p>

- ※ 외교관·공무 여권을 소지하고 30일 이내의 외교·공무활동을 하려는 경우 사증 불요(사증면제협정 대상)
- ※ 공무 수행차 입국하여 장기 체류하려는 모든 외국인은 관용여권으로 무사증 입국이 가능하더라도 반드시 재외공관에서 사증발급 필요

## 16. 단기방문(C-3)

### 16-1. 단기일반(C-3-1)

#### 16-1-1. 외교공관원 및 영사관원의 비동반가족 ※ 협정대상자(수수료 면제)

【체류기간 90일, 유효기간 1년】

[☞ 목록으로 돌아가기 클릭!](#)

발급대상	초청인측 구비서류	신청인측 구비서류
한국 내 주재 중국 외교공관원 또는 영사관원의 비동반 가족 (배우자, 미성년자녀, 부모, 배우자의 부모)	① 외교공관 등의 협조 공문 ② 외교공관원 또는 영사관원의 여권, 비자, 신분증, 재직증명서	① 사증발급신청서<칼라사진 부착> ② 여권, 신분증의 원본 및 사본 ③ 가족관계 입증서류(호구부 등)

#### 16-1-2. 국민의 배우자 및 자녀

【체류기간 90일이내, 유효기간 5년】

[☞ 목록으로 돌아가기 클릭!](#)

발급대상	초청인측 구비서류	신청인측 구비서류
외국국적을 소지한 국민의 배우자 및 미성년자녀 * 배우자 신청 관련, 국민의 주된 생활 근거지가 중국 인 경우에 한함 * 단, 미성년자녀로서 복수국적자인 경우는 체류기간 90일, 유효기간 1년	①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원본 ②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원본 * 국민의 자녀로써 한국에 출생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출생의학증명서 제출	① 사증발급신청서<칼라사진 부착> ② 여권, 신분증의 원본 및 사본 ③ 결혼증 원본 및 사본 * 결혼증 없는 경우 생략가능 ④ 호구부 원본 및 사본 * 혼인사실 기재된 호구부 제출

#### 16-1-3. 국적취득자 등의 부모 및 자녀

【체류기간 90일이내, 유효기간 5년】

[☞ 목록으로 돌아가기 클릭!](#)

발급대상	초청인측 구비서류	신청인측 구비서류
1.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의 부모 및 미성년자녀 2. 국민과 결혼하여 양국에 혼인 신고를 마치고 1년 이상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자의 부모 및 미성년 자녀 * 피초청자 : 산동성 호구자에 한함 * 단, 미성년자녀로서 복수국적자인 경우는 체류기간 90일, 유효기간 1년	① 초청장 * 당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②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원본 ③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원본	① 사증발급신청서<칼라사진 부착> ② 여권, 신분증의 원본 및 사본 ③ 호구부에 등재되지 않은 자녀의 경우: 출생의학증명서 원본 및 사본 ④ 가족관계입증서류 * 호구부, 결혼증, 출생의학증명서에 한함

16-2. 동포방문(C-3-8)

【체류기간 90일 이내, 유효기간 5년】

[☞ 목록으로 돌아가기 클릭!](#)

발급대상	신청인측 구비서류
<p>만 60세 미만인 외국국적동포 * 국가, 출생지, 호구지, 거주지 등에 관계없이 신청 가능</p>	<p>① 사증발급신청서&lt;칼라사진 부착&gt; ② 여권, 신분증 원본 및 사본 * 제1세대 신분증 및 임시신분증 접수 불가능 ③ 호구부 사본 * 17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 호구부 사본 및 출생의학증명서 제출 ④ 국가이민관리국이 발급한 출입경기록조회결과서 (조회기간: 사증신청일 기준 과거 5년 이내) ⑤ 만14세 이상인 자는 '범죄경력증명서' 제출 (유효기간 6개월) - 국적국 범죄기록 증명서 제출 * 중국 內 모든 범죄경력(호구지 및 거주지)이 포함되어야하며, 공증 및 인증 필요 (단, 범죄기록증명서에 QR코드로 문서의 진위여부 판단이 가능하면 공증 및 인증 불요) - 신청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1년 이상 거주한 제3국이 있는 경우 해당 국가 범죄경력증명서류 추가제출 (한국어 번역본 공증 인증 및 해당 국가 대사관(영사관) 영사확인) <b>&lt;&lt; 제출면제 대상 &gt;&gt;</b> - 만 14세 미만인 사람 - 대한민국 출생 또는 만 14세 미만 입국하여 만 14세 이후 해외에서 6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류하지 않은 사람 - 사증발급 시 해외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하고 사증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국내에서 체류자격변경을 신청하는 사람 - 발급국가 기준에 따라 발급 제한 연령이거나, 거주요건 미충족 등으로 발급이 어려운 사람 ※ (예시) 만 18세 미만 캐나다인 등 * 신청인이 증명서 제출이 불가능한 사실을 소명 - 천재지변, 전쟁 등으로 범죄경력증명서 발급받기 불가능하거나 그에 준하는 사정*이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신청인이 증명서 제출이 불가능한 사실을 소명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독립)유공자와 유족</p>

### 16-3. 일반관광(C-3-9)

【체류기간 90일 이내, 유효기간 5년】

[☞ 목록으로 돌아가기 클릭!](#)

- 공통서류:	① 사증발급신청서<칼라사진(3x4cm)1매 부착> ② 여권, 신분증의 원본 및 사본
---------	---

<p>※ 경제능력 입증서류 ( '22.7.1.부터 ) * 해당자에 한함</p>	<p>(해당자) 2, 4, 10, 11번 발급대상자</p> <p>(필수) ①재직증명서, ②영업집조부분의 사본, ③최근 6개월이상 급여(소득)입금 사실 확인가능한 은행 거래내역서 원본(급여 입금부분은 체크하여 제출)</p> <p>(추가,택1) ①사회보험카드 내역서, ②소득세 증명서</p> <p>&lt;회사 등 재직자가 아닌 경우&gt;</p> <p>(필수) 소득원에 대한 기술서(임대소득, 이자소득 등) *별도 양식 없음</p> <p>(추가,택1) ①소득세 증명서, ②최근 6개월이상 급여(소득)입금사실 확인 가능한 은행 거래 내역서 원본(급여 입금부분은 체크하여 제출)</p> <p>* 본인 소득이 아닐 경우, 직계가족(배우자, 자녀, 부모)의 소득도 인정</p> <p>※ 경제능력 입증서류 제출시, 호구부 사본 제출필수</p>
---	--

발급대상	신청인측 구비서류
<p>1. 대학(전문대 포함)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 및 초,중,고교 교사</p> <p>* 산동성 재직자에 한함</p>	<p>① 공통서류 ② 자격증 원본 및 사본 ③ 재직증명서 ④ 인터넷 확인서류(사회보험)</p>
<p>2. 유명 예술가, 연예인 및 운동선수</p>	<p>① 공통서류 ② 예술가 등의 소명자료</p> <p>* 특정단체(협회 등)의 회원증 또는 기타 신분입증서류</p>
<p>3. 중국인 단체 관광객 인솔 여행사의 가이드로 3회 이상 입국한 적이 있는자</p>	<p>① 공통서류 ② 가이드 신분증 사본 및 재직증명서 ③ 가이드 신분으로 3회 이상 출입국한 사실 입증서류</p> <p>* 여권 상 ③항 입증서류 사본 등</p>
<p>4. 대한민국 방문 경력이 있는자</p> <p>* 무사증 입국(상륙허가 포함)은 대한민국 방문 경력 제외 * 단체, 개별보증사증으로 방문한 경력은 2016.1.27. 이전 대한민국에 입국한 경력에 한하여 인정 * 사증불허 후 최초 신청 또는 비전문취업(E-9) 및 선원취업(E-10) 사증으로 방문 경력자는 경제능력입증자료 제출 [단수사증 4-5. 일반관광(C-3-9) ④항 참조]</p>	<p>① 공통서류 ② 출입국사실 입증서류 원본 및 사본</p> <p>※ (의료관광사증으로 대한민국을 방문한 경력이 있는 경우) 의료관광사증으로만 대한민국을 방문한 경우,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대한민국 내 병원 또는 의원에서 지출한 진료(치료)비 총액이 한화 20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대한민국 방문경력으로 인정함. 따라서 진료비 입증자료를 추가 제출하여야 함(16.3.31.부)</p>
<p>5. 200만圆 이상의 개인재산 소유자(부동산, 금융재산, 사업체 등)</p> <p>* 금융재산(예금증명서)은 6개월 이상 예치된 경우에 한함</p>	<p>① 공통서류 ② 재산 입증자료 원본 및 사본</p>
<p>6. 중국 공무원 또는 공무원통여권 소지자</p> <p>* 산동성 재직자에 한함</p>	<p>① 공통서류 ② 재직증명 ③ 사회보험가입 증명 ④ 공무원통여권 소지자는 재직회사 신분증 사본</p>

<p>7. 미화 100만불(한화10억원) 이상 우리나라에 투자한 기업의 임직원</p>	<p>① 공통서류 ② 투자사실 입증자료(법인등기부등본 등) ③ 재직증명서(사회보험카드 내역서 포함)</p>
<p>8. 우리나라에 취항하는 항공사,선사의 임직원 * 정기,전세기,부정기 등 불문</p>	<p>① 공통서류 ② 재직증명서(사회보험카드 내역서 포함) ③ 영업집조의 부분의 사본</p>
<p>9. 아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사람 1)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신용카드 소지자 중 사용실적, 신용도 등을 평가하여 재외 공관장이 우수고객으로 인정하는 사람 2) 즈마신용점수 780점 이상 우수 회원 3) 유니온페이 발급 프리미엄(플래티넘·다이아몬드) 신용카드 소지자</p>	<p>9-1) ① 공통서류 ② 카드 원본 및 사본(원본대조 후 당일 반환) ③ 카드사용 내역서(최근 6개월) 9-2) ① 공통서류 ② 알리페이 발급 신용평가서 9-3) ① 공통서류 ② 유니온페이 발급 신용카드 앞면 사본 및 최근 3개월 간 월별 카드이용대금명세서</p>
<p>10. 월 5천위안 이상(연 6만 위안) 이상 소득이 있는 자</p>	<p>① 공통서류 ② 월소득 입증자료(개인소득세 납부자료 포함) * 은행내역서상 급여(工资, 代发, 奖金 등)로 표기된 경우에 한함. * 은행내역서상 급여 입금 부분 체크하여 제출 ③ 사회보험카드 내역서</p>
<p>11. 17세 미만 또는 55세 이상인 자</p>	<p>① 공통서류 * 17세 미만의 경우, 부·모 호구부 사본(부모 여부 표시할 것) 및 신청인의 출생의학증명서(원본) 제출</p>
<p>12. 4년제 대학 재학생 또는 졸업생</p>	<p>① 공통서류 ② 재학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학위증 사본 ③ ‘교육부학적재선검증보고’ (중국대학 관련자) * <a href="http://www.chsi.com.cn">http://www.chsi.com.cn</a>참조 * 2~3년제 대학 제외 ④ 중국 외의 국가의 학사학위 이상 취득자는 중국 교육부 유학복무증심(<a href="http://www.renzheng.cscse.edu.cn">http://www.renzheng.cscse.edu.cn</a>)의 국외학력학위인정서 제출</p>
<p>13. 중국기업연합회가 선정한 500대 기업의 과장급 이상 또는 6개월 이상 재직자 * 산동성 소재기업에 한함</p>	<p>① 공통서류 ② 영업집조 부분의 사본 ③ 재직증명서 ④ 인터넷 확인서류(사회보험)</p>
<p>14. 국내 소재의 콘도미니엄 회원권(3,000만원 이상) 구매자</p>	<p>① 공통서류 ② 콘도미니엄 회원권 계약서 원본 및 사본 ③ 취득세 납부사실 증명서 원본</p>
<p>15. 유효한 단기방문(C-3) 복수사증 소지자*의 배우자, 미성년 자녀**, 부모 및 배우자의 부모 * 아래 사유로 복수사증을 발급받아 소지하는 자는 제외 ● 동포방문(C-3-8) ● 17세 미만 55세 이상인 자 ● 4년제 대학 재학생 또는 졸업생 * 복수사증 소지자의 사증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 한함 * 복수국적자는 복수국적자 처리지침에 따름</p>	<p>① 공통서류 ② 복수사증 사본 ③ 사증소지자의 신분증 사본 ④ 가족관계 입증서류(원본 및 사본) * 다음 3개 서류 모두 제출 : 호구부, 결혼증, 출생의학증명서(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 부모의 경우 복수사증 소지자와의 관계 입증서류(호구부, 결혼증 등) 제출</p>

<p>16.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선전, 쑤저우, 샤먼, 톈진, 난징, 항저우, 닝보, 우한, 창사, 칭다오, 충칭 지역 호구자 (14개도시)</p> <p>※ 칭다오시 발급 대상지역 ⇒서남구, 서북구, 이창구, 성양구, 노산구, 황도구 (단, 즉묵구, 교주시, 평도시, 래서시 지역 제외)</p> <p>※ 톈진시 등 공관지정 제외지역 접수 불가</p>	<p>① 공통서류 및 신분증 원본(제2세대)</p>
<p>17. 우리나라와의 연간 교역액이 미화 3만불 이상인 사기업의 관리자 이상의 직위에 있거나 2년 이상 정규 직원으로 고용되어 근무한 자</p>	<p>① 공통서류 ② 재직증명서(사회보험카드 내역서 포함) * 사회보험은 재직회사와 관련성 있어야 함 ③ 영업집조 등 영업허가서 사본 ④ 대한민국기업과의 거래실적 입증서류 * 예: 수출입신고필증(報関单) 사본(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자료)</p>
<p>18. 한국방문 우대카드 소지자 및 동반가족 &lt;동반가족 범위&gt;</p> <p>* 신청인의 배우자 및 미성년자녀 * 반드시 카드 발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 접수(접수일 기준) * 카드 발급일로부터 1개월 초과 시 접수 불가 * 동반가족 단독 신청 불가, 반드시 신청인과 동시에 신청하기 바랍니다. * 유효기간 : 5년 * 체류기간 : 30일(15.1.19 변경)</p>	<p>① 공통서류 ② 우대카드 원본 및 사본 * 카드원본은 대조 후 당일 반환 ③ 우대카드 발급대상자 입증서류 * 은행통장 또는 은행잔고증명서 등 * '금융기능 미탑재 우대카드' 소지자는 입증서류 제출 생략 ④ 가족동반 사증 신청 시 친족관계입증서류 추가제출(호구부 등) * 호구부 외 기타 서류로 가족관계입증시 공증 및 인증을 받은 친척 관계증명서 제출 ⑤ 한화 1억원 상당(인민폐 60만 위안) 예치 후 신청 시, 경제 능력 입증자료[단수사증 4-5. 일반관광(C-3-9) ④ 참조]</p>
<p>19. OECD 회원국 방문사증(단체사증제외)을 소지하고 동 OECD 회원국을 방문한 경력이 있는자</p>	<p>① 공통서류 ② OECD국가 출입국사실 입증서류 원본 및 사본 ③ 공안국에서 발급받은 출입국기록 조회서(제3국을 경유하여 OECD 국가에 입국한 경우에는 OECD 국가로의 출입국 경로가 확인되는 e-티켓 등 여행경로 확인 가능 서류 추가 제출) ※ 방문사증 인정 OECD 22개국 오스트리아, 벨기에, 덴마크, 프랑스, 독일, 그리스,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영국, 미국, 캐나다, 호주, 핀란드</p>

16-4. 일반관광(C-3-9)

【체류기간 90일 이내, 유효기간 10년】

[👉 목록으로 돌아가기 클릭!](#)

<p>- 공통서류:    ① 사증발급신청서&lt;칼라사진(3x4cm)1매 부착&gt;</p> <p>                  ② 여권, 신분증의 원본 및 사본</p>
---

발급대상	신청인측 구비서류
<p><b>1. 의사, 변호사 등 국가공인자격을 요하는 전문직업인, 교수*</b></p> <p>*대학 정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는 5년 복수대상임)</p> <p>※ 산동성 执业 또는 재직자에 한함</p>	<p>① 공통서류</p> <p>② 자격증 원본 및 사본</p> <p>③ 执业证(원본 및 사본) 또는 재직증명</p> <p>    <b>※ 전문직업인 : 执业证(원본 및 사본) 제출 필수</b></p> <p>④ 인터넷 확인서류(사회보험)</p>
<p><b>2. 공·사기업* 대표</b></p> <p>*사기업 대표: 자본금 한화 50억(2,800만위안) 이상</p>	<p>① 공통서류</p> <p>② 공기업 또는 사기업 대표 입증서류(영업집조 등)</p> <p>③ 재직증명</p>
<p><b>3. 대한민국의 4년제 대학 학사이상 또는 해외 석사 학위 이상 소지자</b></p> <p>* 사증소지자가 학사인 경우 그의 가족은 복수사증 신청 대상 아님</p> <p>* 석사 이상 학위 소지자의 가족은 신청가능</p> <p>※ 가족범위 : [15-3] 15항 참조</p>	<p>① 공통서류</p> <p>② 학위증 사본</p> <p>③ ‘<b>교육부학적재선검증보고</b>’ (중국대학 석사이상) (<a href="http://www.chsi.com.cn">http://www.chsi.com.cn</a> 참조)</p> <p>④ 중국 교육부 유학복무중심의 국외학력학위인정서 제출 (한국, 외국대학) (<a href="http://www.renzheng.cscse.edu.cn">http://www.renzheng.cscse.edu.cn</a> 참조)</p>

## 17. 주재(D-7)

【유효기간 2년 이내】

[☞ 목록으로 돌아가기 클릭!](#)

발급대상	초청인착 구비서류	신청인착 구비서류
외국의 공공기관, 단체 또는 회사의 본사, 지사, 기타 사업소 등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대한민국에 있는 그 지사, 자회사, 주재사무소,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계열회사 등에 필수 전문인력(임원, 상급 관리자, 전문가)으로 파견되어 근무하는 자	① 사업자등록증명 ② 지사 또는 연락사무소 설치허가서 사본 ③ 영업자금 도입 실적 증빙서류 ④ 연간 납부내역증명 * 비영리연락사무소는 1,2서류 및 영업자금 도입 실적 증빙서류 제출	① 사증발급신청서<칼라사진 부착> ② 여권, 신분증의 원본 및 사본 ③ 이력서 또는 경력증명서 ④ 본사파견명령서(재직기간명시) ⑤ 본사 설립관련 서류 * 중국의 경우 영업집조 포함 ⑥ 결핵진단서

## 18. 기업투자(D-8)

【유효기간 2년 이내】

[☞ 목록으로 돌아가기 클릭!](#)

발급대상	초청인착 구비서류	신청인착 구비서류
<b>기업 투자(D-8-1)</b> 「외국인 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 투자기업인 대한민국 법인의 경영, 관리 또는 생산 기술분야에 종사하려는 필수 전문인력(임원, 상급관리자 전문가)으로서 국내에서 채용하는 자는 제외  ※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규칙」 지정 「지역본부(제9조의4)」 또는 「연구개발시설(제16조)」은 지정서 및 근무인력 명단(성명, 직책, 학력, 연구경력, 근무분야 등) 추가 제출 ※ 유효기간 2년 이내의 복수사증 발급, 수수료 면제	① 외국인 투자기업등록증 사본 ② 사업자 등록증 사본,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주변동상황명세서 원본 ③ 3억원 미만 개인투자자 추가 제출 서류 - 자본금 사용내역 입증서류(국내계좌 입출금 등) - 사업장 존재 입증 서류( 임대차계약서 등) - 사업 실적 입증서류	① 사증발급신청서<칼라사진 부착> ② 여권, 신분증의 원본 및 사본 ③ 주재활동의 경우 (해외)본사 발행 파견 명령서(기간 명시), 재직증명서 ④ 투자자금(1억원이상, 본의명의 원칙*)도입관련 입증서류 - 현금: 본국의 외화반출허가신고서(해당자), 송금확인증 등 - 현물: 현물출자완료 확인서(관세청장 발행), 세관 수입신고필증 사본 * 예외 인정 범위: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3억 이상의 경우 부모 및 배우자 부모 추가인정 ⑤ 결핵진단서

## 19. 방문동거(F-1)

### 19-1. 재외동포(F-4)자격 소지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F-1-9)

【체류기간 1년, 유효기간 1년】

[☞ 목록으로 돌아가기 클릭!](#)

**【안내사항】** 방문동거 2종(F-1-9, F-1-11) 사증 관련, 외지호구자의 경우 2019.12.9.부터 거주증명 서류가 강화됩니다. 기존에는 당지 거주증만으로 거주증명을 갈음했으나, 2019.12.9.부터는 당지 거주증 뿐만 아니라 아래 예시에 따른 거주증명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거주증명 예시】** 개인소득세 납부증명서, 사회보험 납부증명서, 학신망(중국 고등교육 학적/학력인증보고), 공적금 등 당관 관할지역에 거주하고 있음이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서류

발급대상	초청인척 구비서류	신청인척 구비서류
재외동포 자격(F-4) 소지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의 경우 동포가 아니더라도 사증 신청 가능	없음	① 사증발급신청서<칼라사진 부착> ② 여권, 신분증의 원본 및 사본 ③ 재외동포(F-4)자격 소지자의 여권 인적사항 및 사증면 사본, 신분증 사본 ④ 가족관계 입증서류(3가지 모두 원본 및 사본 제출) - 배우자 : 호구부, 결혼증, 자녀 출생의학 증명서 * <b>부부쌍방 또는 일방이 재혼인 경우, 이혼증 또는 이혼판결문 제출(사망한 경우 사망의학증명서 제출)</b> - 미성년자녀 : 호구부, 부모 결혼증, 출생의학증명서 ⑤ 결핵진단서 * 만 6세 미만 결핵진단서 제출 면제

### 19-2. 국내 초·중·고교 재학 동포(F-4-30)자격 소지자의 친부 또는 친모(F-1-9)

【체류기간 1년, 유효기간 1년】 (2022.1.3. 부터 시행)

[☞ 목록으로 돌아가기 클릭!](#)

발급대상	초청인척 구비서류	신청인척 구비서류
국내 초·중·고교 재학 동포(F-4-30) 자격 소지자의 친부 또는 친모	① 국내 초·중·고교 재학 동포(F-4-30)의 재학증명서(학교장 발급)	① 사증발급신청서<칼라사진 부착> ② 여권, 신분증의 원본 및 사본 ③ 재외동포(F-4-30) 자격 소지자의 거소신고증 ④ 가족관계 입증서류 - 호구부, 출생증명서 등 ⑤ 결핵진단서

19-3. 방문취업(H-2)자격 소지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F-1-11)

【체류기간 90일, 유효기간 1년】

[☞ 목록으로 돌아가기 클릭!](#)

발급대상	초청인측 구비서류	신청인측 구비서류
방문취업 자격(H-2) 소지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없음	① 사증발급신청서<칼라사진 부착> ② 여권, 신분증의 원본 및 사본 ③ 방문취업(H-2)자격 소지자의 여권 인적사항 및 사증면 사본, 신분증 사본 ④ 가족관계 입증서류(3가지 모두 원본 및 사본 제출) - 배우자 : 호구부, 결혼증, 자녀 출생의학 증명서 * <b>부부쌍방 또는 일방이 재혼인 경우, 이혼증 또는 이혼판결문 제출(사망한 경우 사망의학증명서 제출)</b> - 미성년자녀 : 호구부, 부모 결혼증, 출생의학증명서 ⑤ 결핵진단서 * 만 6세 미만 결핵진단서 제출 면제

## 20. 거주(F-2)

### 20-1. 국민과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복수국적자 제외)(F-2-2)

【체류기간 1년, 유효기간 5년】

[☞ 목록으로 돌아가기 클릭!](#)

발급대상	초청인척 구비서류	신청인척 구비서류
<p>국민과 혼인관계(사실상의 혼인관계 포함)에서 출생한 자녀로써 복수국적자가 아닌자</p> <p>* 병역기피 목적 등으로 국적이탈을 한 자는 사증발급제한</p>	<p>① 대한민국 국민인父 또는 母의 초청장</p> <p>② 위 초청자의 신원보증서</p> <p>* 초청자에게 배우자가 있는 경우 그 배우자의 신원보증서도 함께 제출</p> <p>③ 기본증명서(상세)</p> <p>④ 가족관계증명서(상세)</p> <p>⑤ 혼인관계증명서(상세)</p> <p>⑥ 주민등록증 사본</p> <p>⑦ 초청자와 피초청자의 관계 및 양육권 보유관계 입증서류</p> <p>* 예: 출생의학증명서, 유전자검사 확인서류, 이혼판결서 등</p> <p>* 양육권 보유관계를 입증할 수 없는 경우 피초청자와 동일한 국적을 보유한 피초청자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친권자나 후견인이 없는 경우 친권자나 후견인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공적 서류)</p>	<p>① 사증발급신청서&lt;칼라사진 부착&gt;</p> <p>② 여권, 신분증의 원본 및 사본</p> <p>③ 호구부의 원본 및 사본</p> <p>④ 가족관계 입증서류</p> <p>* 예: 친족관계진술서, 사진 등</p> <p>⑤ 결핵진단서</p> <p>* 만 6세 미만 결핵진단서 제출 면제</p>

## 21. 주재 및 기업투자의 동반가족(F-3)

【유효기간 2년 이내】

[☞ 목록으로 돌아가기 클릭!](#)

발급대상	초청인척 구비서류	신청인척 구비서류
<p>주재(D-7), 기업투자(D-8) 자격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자녀로서 미혼인 자</p>	<p>없음</p>	<p>① 사증발급신청서&lt;칼라사진 부착&gt;</p> <p>② 여권, 신분증의 원본 및 사본</p> <p>③ 가족관계 입증서류</p> <p>④ 결핵진단서</p>

## 22. 재외동포(F-4)

【체류기간 2년, 유효기간 5년】

[👉 목록으로 돌아가기 클릭!](#)

<p>① 사증발급신청서&lt;칼라사진(3x4cm)1매 부착&gt;</p> <p>② 여권, 신분증, 호구부의 원본 및 사본</p> <p>③ 결핵진단서</p> <p>④ 국가이민관리국이 발급한 출입경기록조회결과서 (조회기간: 사증신청일 기준 과거 5년 이내)</p> <p>⑤ 범죄경력증명서(유효기간 6개월)</p> <p>- 국적국 범죄기록증명서 제출</p> <p>* 중국 内 모든 범죄경력(호구지 및 거주지)이 포함되어야하며 공증 및 인증 필요. (단, 범죄기록증명서에 QR코드로 문서의 진위여부 판단이 가능하면 공증 및 인증 불요)</p> <p>- 신청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1년 이상 거주한 제3국이 있는 경우 해당국가 범죄경력증명서류 추가제출 (한국어 번역본 공증 인증 및 해당국가 대사관(영사관) 영사확인)</p> <p><b>&lt;&lt; 제출면제 대상 &gt;&gt;</b></p> <p>- 만 14세 미만인 사람</p> <p>- 대한민국 출생 또는 만 14세 미만 입국하여 만 14세 이후 해외에서 6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류하지 않은 사람</p> <p>- 사증발급 시 해외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하고 사증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국내에서 체류자격변경을 신청하는 사람</p> <p>- 발급국가 기준에 따라 발급 제한 연령이거나, 거주요건 미충족 등으로 발급이 어려운 사람</p> <p>※ (예시) 만 18세 미만 캐나다인 등</p> <p>* 신청인이 증명서 제출이 불가능한 사실을 소명</p> <p>- 천재지변, 전쟁 등으로 범죄경력증명서 발급받기 불가능하거나 그에 준하는 사정*이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p> <p>* 신청인이 증명서 제출이 불가능한 사실을 소명</p> <p>-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독립)유공자와 유족</p> <p>- 만 60세 이상인 사람</p> <p>- 재외공관 사증발급 또는 국내 자격변경 시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한 사람으로서 국내 체류허가기간 중 해외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하지 않은 사람 *면제대상 포함</p> <p>⑥ 한국어 능력 입증서류 (아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제출, 유효기간 2년)</p> <p>- 한국어 능력시험(TOPIK) 성적증명서(1급 이상)</p> <p>- 세종학당 수료증(초급1B 과정 이상)</p> <p>-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점수표(21점 이상)</p> <p>-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확인서(1단계 이수 이상)</p> <p>- 교육부 한국교육원 한국어강좌 수료증(2단계 이상)</p> <p>※ 한국어능력 입증서류 미제출시 체류기간 1년 이내 사증 발급(체류기간 단축가능)</p> <p><b>&lt;&lt; 제출면제 대상 &gt;&gt;</b></p> <p>- 만13세 이하인 사람, 만60세 이상인 사람</p> <p>- 재외동포(F4) 사증을 소지하고 국내에서 3년 이상 체류한 사람</p> <p>- 과거 다른 체류자격에서 한국어능력 입증서류를 제출했던 사람</p> <p>- 한국 국적을 보유했던 사람</p> <p>- 한국에서 「초·중등교육법」에 규정된 초등학교 이상을 졸업한 사람 및 「고등교육법」에 규정된 학교를 졸업한 사람</p> <p>- 국내 공인 국가기술자격증(기능사 이상)을 취득한 사람</p> <p>- 국내 초·중·고교 재학자(F-4-30) 신청자</p> <p>- 주의사항: 60세 이상 외국국적동포[F-4-24] 사증은 호구지, 거주지에 관계없이 신청 가능</p>	<p>- 공통서류:</p>
--	----------------

발급대상	신청인측 구비서류
<p>1. 문화예술(D-1) 및 취재(D-5) 내지 무역경영(D-9), 교수(E-1) 내지 특정 활동(E-7) 자격으로 국내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한 사실이 있는 자 [F-4-13]</p>	<p>공통서류만 제출</p>
<p>2. 국내외 전문학사(2년제 이상 졸업자) 이상 학위소지자 및 국제교육진흥원 등 정부초청 장학생 [F-4-14]</p> <p>* 국외 전문학사 소지자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 이상 소지 또는 사회통합 프로그램 4단계 이상 이수증 제출</p> <p>2-1. 국내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정규학력인정 대안학교, 검정고시 합격자 포함)</p>	<p>① 공통서류</p> <p>② 중국고등교육학생정보망(학신망)의 전자학력인증서류(www.chsi.com.cn에서 출력)</p> <p>* 중국지역 이외(해외) 졸업자는 국외학력학위인증서(교육부 유학복무중심 발행) 제출</p> <p>③ 졸업증 및 학위증 사본</p> <p>* 1991년 이전 졸업자의 경우 발급 담당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가 기재된 졸업증명서 및 기타 졸업사실 소명자료 추가 제출</p> <p>* 정부초청 장학생의 경우 장학생 선발관련 서류 제출</p> <p>* 외국에서 학위를 받은 경우 학위증 및 유학사증 부착된 여권 제출</p>
<p>3. OECD 국가의 영주권 소지자 [F-4-15]</p>	<p>① 공통서류</p> <p>② 영주권 또는 영주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원본 및 사본</p>
<p>4. 법인기업체 대표, 등기임원 및 관리직 직원 [F-4-16]</p> <p>* 법인기업체 대표 및 등기임원 : 제한없음</p> <p>* 관리직 직원의 경우 1개 기업당 전체 2명 범위 내</p> <p>* 신청 당시 법인설립 후 1년 이상 경과한 기업체에 한함</p> <p>* 대표자를 제외한 등기임원은 6개월 이상, 관리직 직원은 1년 이상 재직한 경우에 한함</p> <p>* 산동성 소재 법인기업체에 한함</p>	<p>① 공통서류</p> <p>② 영업집조 부분의 사본, 재직증명서, 사회보험증서</p> <p>③ 단순노무업종 비취업 서약서</p> <p>* 당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p> <p>④ 정관 사본(공상국 발급확인, 임원정보 포함)</p> <p style="text-align: center;"><b>&lt;법인기업체 관리직 직원 - 추가제출서류&gt;</b></p> <p>⑤ 법인대표의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또는 재외동포 사증 사본</p> <p>* 법인대표가 재외동포 사증을 발급받지 않은 경우 법인대표와 함께 재외동포 사증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소속직원 사증 발급 가능</p> <p>⑥ 법인대표 신원보증서(회사 직인 날인)</p> <p>* 당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p>
<p>5. 전년도 기준 매출액 미화 10만불 이상의 개인기업(자영업 대표) [F-4-17]</p> <p>* 산동성 소재 기업에 한함</p>	<p>① 공통서류</p> <p>② 영업집조 부분의 사본</p> <p>③ 매출실적 입증자료(세금납부실적)</p>
<p>6. 다국적 기업 임직원(FORTUNE지 선정 500대 기업에 한함), 언론사 임원과 기자, 변호사, 회계사, 의사, 거주국 정부 공인 1급(대학교수 상당)·2급(대학 부교수 상당) 예술가, 산업상 기술연구 개발 연구원, 중급 이상 농업 기술자, 선박 또는 민간항공 분야 고급 기술자 [F-4-18]</p>	<p>① 공통서류</p> <p>② 자격증 원본 및 사본</p> <p>* 농업기술자의 경우 중급 이상의 전문기술 자격증</p> <p>* 선박 또는 민간항공 분야 기술자의 경우 관련 기술 자격증</p> <p>③ 영업집조 부분의 사본, 재직증명서, 사회보험증서</p> <p>④ 기구대마증 사본</p>
<p>7. 거주국에서 공인한 동포단체 또는 문화예술단체(협회)의 대표 및 부대표 [F-4-19]</p> <p>- 단체당 소속 직원 또는 회원 10명 이내</p>	<p>① 공통서류</p> <p>② 소속단체등록증명서</p> <p>③ 재직증명서</p>

<p>※ 동포단체로는 각지역 조선족기업가 협회, 세계한인무역협회, 연변조선족전통요리협회, 북경고려문화경제연구회 등 거주국 정부 등록 동포단체 및 협회 등</p> <p>- 국내 동포지원단체 소속 직원은 1개 단체당 2명 이내</p> <p>※ 동포단체 등 '직원'은 재직기간이 1년 이상 된 자에 한함(국내동포지원단체는 제외)</p> <p>* 산동성 소재 단체에 한함</p>	<p style="text-align: center;"><b>&lt;국외 동포단체 직원 또는 회원 - 추가제출서류&gt;</b></p> <p>④ 동포단체 현황표(당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및 단체회원 명단</p> <p>⑤ 동포단체 대표 추천서</p> <p>⑥ 단순노무업종 비취업 서약서</p> <p style="text-align: center;"><b>&lt;국내 동포지원단체 소속직원 - 추가제출서류&gt;</b></p> <p>④ 동포단체 대표 추천서</p> <p>⑤ 단순노무업종 비취업 서약서</p>
<p><b>8. 전·현직 국회의원, 5년 이상 재직 공무원 및 국영기업체 직원 [F-4-20]</b></p>	<p>① 공통서류</p> <p>② 재직증명서</p> <p>* 국회의원, 공무원: 공작증, 사회보험증명, 공무원증 추가제출</p> <p>* 국영기업체 직원: 공작증, 사회보험증명 추가제출</p>
<p><b>9. 대학교수(부교수, 강사 포함), 중·고등학교 또는 초등학교 교사 [F-4-21]</b></p> <p>* 산동성 소재 학교에 한함</p>	<p>① 공통서류</p> <p>② 재직증명서 및 사회보험증명</p> <p>③ 기구대마증 사본</p> <p>④ 정부 임명장 또는 교사(교수, 강사) 자격증 원본 및 사본</p>
<p><b>10. 국내에서 개인 사업체를 경영하고자 하는 자 [F-4-22]</b></p> <p>* 본인의 자산으로 3억 이상 투자자 또는 2억 이상(국민 1명 이상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하고자 하는 경우) 투자자</p>	<p>① 공통서류</p> <p>② 투자기업 등록 신청서</p> <p>* 국내에서 형성된 자산인 경우 투자기업등록신청서 제출 불요</p> <p>③ 송금 및 반입자금 내역, 환전 증명 및 사용명세서(3억 이상)</p> <p>④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및 보증금 송금내역</p> <p>⑤ 단순노무업종 비취업 서약서</p> <p>⑥ 국민 1명 이상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하고자 하는 경우 국민 고용 예정서약서 제출</p> <p>* 당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p>
<p><b>11. 60세 이상 외국국적동포 [F-4-25]</b></p>	<p style="text-align: center;">공통서류만 제출</p>
<p><b>12. 국내 공인 국가기술자격증 취득자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모두 포함) [F-4-27]</b></p> <p>- 금속재창호 종목은 2013년 취득자까지만 인정</p>	<p>① 공통서류</p> <p>② 국가기술자격증 원본 및 사본</p> <p>* 별첨2 &lt;국가기술 자격의 직무분야 및 국가 기술 자격의 종류&gt; 참조</p>
<p><b>13.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 이수한 사람 [F-4-28]</b></p>	<p>① 공통서류</p> <p>②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증(4단계 이상) 원본 및 사본</p>
<p><b>14. 국내 고등학교 졸업자 [F-4-29]</b></p> <p>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p> <p>- 「초·중등교육법」 제3호의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한 사람</p> <p>- 「초·중등교육법」 제4~5호 특수학교, 각종학교(대안학교, 외국인학교) 중 고등학교에 준하는 학교를 졸업한 사람</p> <p>-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자</p> <p>- 교육부 인가를 받은 외국교육기관, 제주국제학교 고등교육과정 졸업자</p>	<p>① 공통서류</p> <p>② 졸업증명서 또는 검정고시 합격증명서</p> <p>* 외국인학교·외국교육기관·제주국제학교 졸업자 국내 학력인정 교과목(국어, 사회, 국사, 역사 등)을 최소 1과목, 1학기 이상 이수 입증서류 또는 한국어능력 입증서류</p>

14. 과거 재외동포(F-4) 자격 소지자

[F-4-99]

\* 과거 재외동포 자격으로 체류 중 범법 행위로 그 자격이 상실된 자(강제퇴거자) 등은 제외

- ① 공통서류
- ② 사증 사본 또는 거소신고증 사본

## 23. 영주(F-5)

【체류기간 상한 없음】

[☞ 목록으로 돌아가기 클릭!](#)

<p>① 사증발급신청서&lt;칼라사진(3x4cm)1매 부착&gt;</p> <p>- 공통서류: ② 여권, 신분증의 원본 및 사본</p> <p>③ 결핵진단서</p>
---

발급대상	신청인측 구비서류
<p>고액 투자 외국인</p> <p>&lt;외국인투자촉진법&gt;에 따라 미화 50만불 이상 투자한 외국인투자가로서 대한민국 국민을 정기적으로 5인 이상 정기적으로 고용하고 있는 자</p>	<p>① 공통서류</p> <p>② 법인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p> <p>③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p> <p>④ 고용된 국민 5인 이상의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p>

- ① 사증발급신청서<칼라사진(3x4cm)1매 부착>
  - ② 여권, 신분증, 호구부의 원본 및 사본
  - ③ 건강상태확인서
    - \* 당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 ④ 결핵진단서
  - ⑤ 국가이민관리국이 발급한 출입경기록조회결과서 (조회기간: 사증신청일 기준 과거 5년 이내)
  - ⑥ 범죄경력증명서(유효기간 6개월)
    - 국적국 범죄기록증명서 제출
      - \* 중국 内 모든 범죄경력(호구지 및 거주지)이 포함되어야하며 공증 및 인증 필요.  
(단, 범죄기록증명서에 QR코드로 문서의 진위여부 판단이 가능하면 공증 및 인증 불요)
      - 신청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1년 이상 거주한 제3국이 있는 경우 해당국가 범죄경력증명서류 추가제출 (한국어 번역본 공증 인증 및 해당국가 대사관(영사관) 영사확인)
      - << 제출면제 대상 >>**
        - 만 14세 미만인 사람
        - 대한민국 출생 또는 만 14세 미만 입국하여 만 14세 이후 해외에서 6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류하지 않은 사람
        - 사증발급 시 해외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하고 사증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국내에서 체류자격변경을 신청하는 사람
        - 발급국가 기준에 따라 발급 제한 연령이거나, 거주요건 미충족 등으로 발급이 어려운 사람
          - ※ (예시) 만 18세 미만 캐나다인 등
          - \* 신청인이 증명서 제출이 불가능한 사실을 소명
        - 천재지변, 전쟁 등으로 범죄경력증명서 발급받기 불가능하거나 그에 준하는 사정\*이 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 신청인이 증명서 제출이 불가능한 사실을 소명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독립)유공자와 유족
        - 만 60세 이상인 사람
        - 재외공관 사증발급 또는 국내 자격변경 시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한 사람으로서 국내 체류허가 기간 중 해외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하지 않은 사람 \* 면제대상 포함
        - 방문취업 만기출국 후 재입국자(H-2-7) 사증 신청자 중 안전출국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 ⑦ 한국어 능력 입증서류 제출 (아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제출)
    - 한국어 능력시험(TOPIK) 성적증명서(1급 이상)
    - 세종학당 수료증(초급1B 과정 이상)
    -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점수표(21점 이상)
    -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확인서(1단계 이수 이상)
    - 교육부 한국교육원 한국어강좌 수료증(2단계 이상)
    - ※ 한국어 능력 입증서류 미제출시 체류기간 **1년 이내** 사증 발급(체류기간 단축가능)
    - << 제출면제 대상 >>**
      - 만60세 이상인 사람
      - 과거 다른 체류자격에서 한국어능력 입증서류를 제출했던 사람
      - 한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던 사람
      - 한국에서 「초·중등교육법」에 규정된 초등학교 이상을 졸업한 사람 및 「고등교육법」에 규정된 학교를 졸업한 사람
      - 만기출국 후 재입국한 사람(H-2-7)
    - 만 18세 이상 외국국적동포에게 발급 가능
- 공통서류:
- 주의사항: - 호구지 관할 공관에 신청 가능(단, 만기출국 후 재입국자(H-2-7) 사증은 호구지, 거주지에 관계없이 신청 가능)

24-1. 대한민국 국민으로부터 초청을 받은 자(H-2-1) 등  
**【체류기간 1년, 유효기간 3년】**

[👉 목록으로 돌아가기 클릭!](#)

발급대상	초청인척 구비서류	신청인척 구비서류
<p>국내에 주소를 둔 대한민국 국민 또는 영주자격을 취득한 외국 국적동포(F-5-7)로부터 초청을 받은 2촌 이내의 친족</p> <p>* 직계존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합산하여 3명 이내 초청가능하며, 1년에 1명만 초청가능</p> <p>* <b>초청자 만 31세 이상, 신청자 만 18세 이상</b> 이어야함.</p>	<p>&lt;대한민국 국민의 초청일 경우&gt;</p> <p>① 초청장                      * 당관 홈페이지에서 출력하여 작성                      * 귀국보장각서 내용이 기재된 것</p> <p>② 가족관계증명서(상세)</p> <p>③ 혼인관계증명서(상세)</p> <p>④ 신원보증서</p> <p>⑤ 주민등록증 사본</p> <p>⑥ 친척초청내역서</p> <p>&lt;영주자격을 취득한 외국국적동포(F-5-7)의 초청일 경우&gt;</p> <p>① 초청장                      * 당관 홈페이지에서 출력하여 작성                      * 귀국보장각서 내용이 기재된 것</p> <p>② 결혼증 사본</p> <p>③ 신원보증서</p> <p>④ 외국인등록증 사본</p> <p>⑤ 친척초청내역서</p>	<p>① 공통서류</p> <p>② 친족관계 입증자료                      * 친속관계진술서 작성                      - 당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p> <p>* 가계도 및 사진자료</p> <p>* 중국공적공부상 친인척 증명자료</p> <p>* 제적등본, 족보, 장기왕래서신 등</p>
<p>「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에 해당하거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는 자</p>	<p>①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또는 제적등본이나 족보 등 신청인이나 신청인의 부모가 독립유공자의 직계 혈족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p> <p>② 국가유공자증, 독립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유족증, 독립유공자유족증 등 국가(독립)유공자 또는 그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p>	<p>① 공통서류</p> <p>② 친족관계입증자료                      * 친속관계진술서 작성                      - 당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p> <p>* <b>가계도 및 사진자료</b></p> <p>③ 가족관계입증서류</p> <p>④ 가계도</p>
<p>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대한민국의 국익 증진에 기여하여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훈장 등을 수여 받은 자</p>	<p>없음</p>	<p>① 공통서류</p> <p>② 대한민국정부가 수여한 훈, 포장증서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여한 표창장 원본 및 사본</p>

## 24-2. 방문취업 무연고동포(H-2-5)

【체류기간 1년, 유효기간 3년】

[☞ 목록으로 돌아가기 클릭!](#)

발급대상		신청인측 구비서류								
<p>아래 연도별 방문취업(H-2-5) 사증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무연고 중국 동포</p> <p>&lt; 연도별 방문취업(H-2-5) 사증 신청대상(18세 미만 제외) &gt;</p> <table border="1"> <tr> <td>2020년 신청대상</td> <td>2015년, 2016년에 발급된 C-3-8 사증 소지자</td> </tr> <tr> <td>2021년 신청대상</td> <td>2018년까지 발급된 C-3-8 사증 소지자</td> </tr> <tr> <td><b>2022년 신청대상</b></td> <td><b>2020년까지 발급된 C-3-8 사증 소지자</b></td> </tr> <tr> <td>2023년 신청대상</td> <td>2021년부터 발급된 C-3-8 사증 소지자</td> </tr> </table> <p>※ 2020.7.1.부터 호구지 관할 재외공관에 신청</p>		2020년 신청대상	2015년, 2016년에 발급된 C-3-8 사증 소지자	2021년 신청대상	2018년까지 발급된 C-3-8 사증 소지자	<b>2022년 신청대상</b>	<b>2020년까지 발급된 C-3-8 사증 소지자</b>	2023년 신청대상	2021년부터 발급된 C-3-8 사증 소지자	<p>① 공통서류 ② 동포방문 사증(C-3-8) 복사본</p>
2020년 신청대상	2015년, 2016년에 발급된 C-3-8 사증 소지자									
2021년 신청대상	2018년까지 발급된 C-3-8 사증 소지자									
<b>2022년 신청대상</b>	<b>2020년까지 발급된 C-3-8 사증 소지자</b>									
2023년 신청대상	2021년부터 발급된 C-3-8 사증 소지자									

## 24-3. 방문취업 만기출국자(H-2-7)

【체류기간 1년, 유효기간 3년】

[☞ 목록으로 돌아가기 클릭!](#)

발급대상	초청인측 구비서류	신청인측 구비서류
<p>H-2 비자를 소지하고 2011.8.17.이후 완전출국 한 자로 출국한 날로부터 <b>1개월이</b> 경과된 자 중 “<b>만 60세 미만자</b>”</p> <p>* 경과 기간 중 다른 장기사증(G-1 제외)을 발급받은 자는 대상에서 제외</p> <p>* H-2로 최종 출국 시 강제퇴거 받은자는 대상에서 제외</p>	없음	<p>① 공통서류</p> <p>* ⑦한국어능력입증서류는 제출 생략</p>

# 기 타

## 1. 사증발급인정서 소지자의 사증신청

[☞ 목록으로 돌아가기 클릭!](#)

발급대상	신청인측 구비서류
<p>문화예술(D-1), 유학(D-2), 기술연수(D-3), 일반연수(D-4), 취재(D-5), 종교(D-6), 주재투자(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 구직(D-10),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 특정활동(E-7), 동반(F-3) 등의 목적으로 <b>91일 이상 장기체류</b>하려는 자</p> <p>※ 의료관광(C-3-3)은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 받았더라도 추가로 '병원 등 예약 및 진료기록' 과 '경제능력 입증서류' 추가 제출 필요 - 경제능력입증서류는 [단수사증 4-5. 일반관광(C-3-9) ④항] 참조</p> <p>※ 통역판매사무원(E-7-2) 중 '중국 대학 등에서 한국어연수' 요건으로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 받은 경우에는 재외공관에서 전원 한국어 인터뷰 실시(2019.12.31.한, 이후 해당요건 폐지)</p>	<p>① 사증발급신청서&lt;칼라사진 부착&gt; ② 여권, 신분증의 원본 및 사본 ③ 사증발급인정서번호 *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발급 ④ 결핵진단서 ⑤ 범죄기록증명서 (12.11.01시행) ※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은 <b>범죄경력증명서 및 건강상태확인서 추가제출</b> * 중국 內 모든 범죄경력(호구지 및 거주지) 이 포함 되어야 하며 공증 및 인증 필요. (단,범죄기록증명서에 QR코드로 문서의 진위여부 판단이 가능하면 공증 및 인증 불요) * 건강상태확인서는 당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공증불요) * 결핵진단서(16.3.2.부 시행)</p>

## 2. 재입국허가기간 연장

[☞ 목록으로 돌아가기 클릭!](#)

발급대상	신청인측 구비서류
<p>재입국허가를 받고 외국에 체류 중 선박 등이 없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허가된 기간내에 재입국 할 수 없어 허가 또는 면제기간만료일 이전에 그 허가 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자</p> <p>* 연장기간: 3개월 이내(허가받은 체류기간 내) * 처리기간 : 3일(접수일 포함, 2015.8.18일부터)</p>	<p>① 여권, 외국인등록증 ② 신분증 및 호구부 사본 ③ 재입국허가기간연장허가신청서 ④ 사유서 및 그 사유를 증빙하는 서류</p>

### 3. 더블사증(2회 유효)

[☞ 목록으로 돌아가기 클릭!](#)

발급대상	신청인측 구비서류
단수사증 발급대상 이지만, 단기간(6개월)내에 2회 이상의 출입국이 예상되는 자  * 단기방문(C-3)사증 * 유효기간 6개월, 체류기간 30일	① 해당 단수사증의 신청서류와 동일 ② 6개월 이내 2회 입출국 사유 및 소명자료
동일한 단체관광객이 여행 일정상 우리나라를 재방문(예시:중국→한국→일본→한국→중국 등)하려는 경우  * 유효기간 각 3개월, 체류기간 30일	① 4-2. 단체관광 등(C-3-2)의 4-2-1 단체관광과 동일

### 4. 급행사증('22.6.1.부터)

[☞ 목록으로 돌아가기 클릭!](#)

발급대상	구비서류
단기종합(C-3), 단기취업(C-4) 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 사증 신청자 ※ 기타 긴급하여 발급이 필요한 경우	해당사증의 신청서류와 동일  ※ 해당사증 신청서류 및 사유서 추가제출

#### 4-1. 급행사증 수수료

[☞ 목록으로 돌아가기 클릭!](#)

사증종류	일반사증 수수료	급행사증 수수료
단수사증(90일 이하)	US\$40( ¥280)	US\$60( ¥420)
단수사증(90일 이상)	US\$60( ¥420)	US\$80( ¥560)
더블사증	US\$70( ¥490)	US\$90( ¥630)
복수사증	US\$90( ¥630)	US\$130( ¥910)

#### 4-2. 급행사증 접수 및 처리기간

[☞ 목록으로 돌아가기 클릭!](#)

접수 및 처리기간	신청장소	오전 급행 접수 시	오후 급행 접수 시
	*인사여권: 비자신청센터 *인공여권: 당관	*(접수일 포함) 근무일 2일째 15:00 이후 교부 (비자신청센터)	*(접수일 포함) 근무일 3일째 15:00 이후 교부 (비자신청센터)

※ 최종 출국 시 강제퇴거명령 또는 출국명령을 받은 외국인은 급행 신청대상에서 제외됨.

<b>학위과정</b>	<b>2021년 인증위원회 평가 결과(2022.3월부터)</b>
-------------	-------------------------------------

**우수 인증대학(25교)**

구분	대 학 명
일반 대학 (19교)	2018인증 (3교) 덕성여자대, 울산과학기술원, 포항공과대
	2019인증 (12교) 건국대, 부산외국어대, 서강대, 서울시립대, 서울신학대, 아신대, 연세대(미래), 이화여자대, 중앙대, 한양대, 한양대(ERICA), 호원대
	2020 인증 (4교) 국민대, 부산대, 성신여자대, 홍익대
전문 대학 (1교)	2019 인증 (1교) 인하공업전문대
대학원 대학 (5교)	2018 인증 (1교)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대학교
	2019 인증 (3교)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 국립암센터 국제암대학원대,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대
	2020 인증 (1교) 서울외국어대학원대

**인증대학(132교)**

구분	대 학 명
일반 대학 (111교)	신규 인증 (11교) 강원대, 건국대(글로벌), 공주대, 광주과학기술원, 신한대, 안양대, 영산대, 전남대, 초당대, 추계예술대, 한국항공대
	2018인증 (6교) 덕성여자대, 세한대, 울산과학기술원, 포항공과대, 한국교통대, 한국해양대
	2019 인증 (58교) 가천대, 가톨릭대, 건국대, 건양대, 경남대, 경북대, 경희대, 고려대, 고려대(세종), 광주대, 군산대, 나사렛대, 단국대, 대구가톨릭대, 대구대, 대전대, 동서대, 동아대, 명지대, 배재대, 부산외국어대, 서강대, 서경대, 서울과학기술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서울신학대, 신문대, 성균관대, 세명대, 숙명여자대, 순천대, 신라대, 아신대, 아주대, 연세대, 연세대(미래), 영남대, 우송대, 이화여자대, 인제대, 인하대, 전북대, 제주대, 중앙대, 충남대, 충북대, 한국기술교육대, 한국산업기술대, 한국의국어대, 한남대, 한밭대, 한세대, 한양대, 한양대(ERICA), 호남대, 호서대, 호원대
	2020 인증 (36교) 강릉원주대, 경기대, 경성대, 계명대, 광운대, 광주여자대, 국민대, 김천대, 남서울대, 대구한의대, 동국대, 동명대, 동신대, 목원대, 백석대, 부경대, 부산대, 삼육대, 서울여자대, 성신여자대, 세종대, 순천향대, 송실대, 안동대, 인천대, 조선대, 중부대, 창원대, 청주대, 한경대, 한국과학기술원, 한국교원대, 한림대, 한서대, 한성대, 홍익대

전문대학 (8교)	신규 인증 (2교)	대전과학기술대, 한국영상대
	2019 인증 (2교)	경북대, 인하공업전문대
	2020 인증 (4교)	거제대, 경기과학기술대, 영진전문대, 원광보건대
대학원대학 (13교)	신규인증 (1교)	국제영어대학원대
	2018 인증 (1교)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대
	2019 인증 (9교)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 국립암센터국제암대학원대, 국제법률경영대학원대, 동방문화대학원대,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 선학유피대학원대, 한국개발연구원국제정책대학원대, 한국전력국제원자력대학원대, 햇불트리니티신학대학원대
	2020 인증 (2교)	서울외국어대학원대, 온석대학원대

**어학연수과정** 2021년 인증위원회 평가 결과(2022.3월부터)

□ 우수 인증대학(25교)

구분		대학명
일반대학 (19교)	2018인증 (3교)	덕성여자대, 울산과학기술원, 포항공과대
	2019인증 (12교)	건국대, 부산외국어대, 서강대, 서울시립대, 서울신학대, 아신대, 연세대(미래), 이화여자대, 중앙대, 한양대, 한양대(ERICA), 호원대
	2020 인증 (4교)	국민대, 부산대, 성신여자대, 홍익대
전문대학 (1교)	2019 인증 (1교)	인하공업전문대
대학원대학 (5교)	2018 인증 (1교)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대학교
	2019 인증 (3교)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 국립암센터 국제암대학원대,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대
	2020 인증 (1교)	서울외국어대학원대

□ 인증대학(106교)

구분	대학명	
일반 대학 (92교)	신규 인증 (9교)	강원대, 경기대, 대구한의대, 동국대, 신한대, 영산대, 전남대, 중부대, 청주대
	2018인증 (6교)	덕성여자대, 세한대, 울산과학기술원, 포항공과대, 한국교통대, 한국해양대
	2019 인증 (58교)	가천대, 가톨릭대, 건국대, 건양대, 경남대, 경북대, 경희대, 고려대, 고려대(세종), 광주대, 군산대, 나사렛대, 단국대, 대구가톨릭대, 대구대, 대전대, 동서대, 동아대, 명지대, 배재대, 부산외국어대, 서강대, 서경대, 서울과학기술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서울신학대, 신문대, 성균관대, 세명대, 숙명여자대, 순천대, 신라대, 아신대, 아주대, 연세대, 연세대(미래), 영남대, 우송대, 이화여자대, 인제대, 인하대, 전북대, 제주대, 중앙대, 충남대, 충북대, 한국기술교육대, 한국산업기술대, 한국외국어대, 한남대, 한밭대, 한세대, 한양대, 한양대(ERICA), 호남대, 호서대, 호원대
	2020 인증 (19교)	강릉원주대, 계명대, 광운대, 광주여자대, 국민대, 남서울대, 목원대, 부경대, 부산대, 서울여자대, 성신여자대, 세종대, 순천향대, 송실대, 창원대, 한경대, 한서대, 한성대, 홍익대
전문 대학 (4교)	신규 인증 (1교)	대전과학기술대
	2019 인증 (2교)	경북대, 인하공업전문대
	2020 인증 (1교)	경기과학기술대
대학원 대학 (10교)	2018 인증 (1교)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대
	2019 인증 (9교)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 국립암센터국제암대학원대, 국제법률경영대학원대, 동방문화대학원대,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 신학유피대학원대, 한국개발연구원국제정책대학원대, 한국전력국제원자력대학원대, 헛불트리니티신학대학원대

## 별첨1 【점수제 구직비자(D-10-1) 배점표】

□ 총 190점 중 기본항목이 20점 이상으로 총 득점이 60점 이상인자

배점항목		배점기준		배점	비고	
기본	연령	20~ 24세		10	50점	
		25~ 29세		15		
		30~ 34세		20		
		35~ 39세		15		
		40세~49세		5		
	최종학력	국내	전문학사	15		
국내/국외		학사	15			
		석사	20			
		박사	30			
선택	취업경력	국내	국외		70점	
		1년~2년	3년~4년	5		
		3년~4년	5년~6년	10		
		5년이상	7년이상	15		
	국내유학	전문학사(졸업후 3년이내)		5(30)		
		학 사(졸업후 3년이내)		10(30)		
		석 사(졸업후 3년이내)		15(30)		
		박 사(졸업후 3년이내)		20(30)		
	국내연수	대학 연구생 (D-2-5) 교환학생 (D-2-6) 국공립기관 연수 (D-4-2) 사설 기관 연수 (D-4-6)	12개월~18개월	3		
			19개월이상	5		
		어학연수 (D-4-1)	12개월~	3		
	한국어능력	토픽(TOPIK) / 사회통합 프로그램(KIIP)		5급/5단계 이상		20
				4급/4단계		15
3급/3단계				10		
2급/2단계				5		
가점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재외공관장 구직비자 발급 추천			20	70점	
	② 세계 우수대학 졸업자(타임지 200대, QS 500대)			20		
	③ 글로벌기업근무 경력자(포천지 500대)			20		
	④ 이공계 학사(국내 전문학사 포함) 학위 소지자			5		
	⑤ 고소득(5만달러) 전문직 종사 경력자			5		
감점	위반횟수	1회	2회	3회		
	출입국관리법	5	10	30		
	기타 국내법령	5	10	30		

별첨2

국가기술 자격의 직무분야 및 국가기술 자격의 종류

□ 기술·기능 분야 및 서비스 분야							
직무분야(26)	중직무분야(61)	기술·기능 분야(510)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84	28	117	120	161	
01 사업관리(1/0)	011 사업관리(-)						
02 경영·회계·사무(4/25)	021 경영(6)						
	022 회계(3)						
	023 사무(9)						
	024 생산관리(7)	공장관리					
		포장			포장	포장	
				품질경영	품질경영		
		품질관리					
03 금융·보험(1/0)	031 금융·보험						
04 교육·자연과학·사회과학(1/0)	041 교육·자연과학·사회과학						
05 법률·경찰·소방·교도·국방(1/0)	051 법률·경찰·소방·교도·국방(-)						
06 보건·의료(1/3)	061 보건·의료(3)						
07 사회복지·종교(1/2)	071 사회복지·종교(2)						
08 문화·예술·디자인·방송(3/13)	081 문화·예술						
	082 디자인(11)			서비스·경험디자인			
				시각디자인	시각디자인		
		제품디자인		제품디자인	제품디자인	웹디자인	
						제품응용모델링	
			컬러리스트	컬러리스트	컴퓨터그래픽스응용		
	083 방송(2)				영상	영상	
09 운전·운송(1/2)	091 운전·운송(2)					농기계운전	
					철도운송		
10 영업·판매(1/4)	101 영업·판매(4)						
11 경비·청소(1/0)	111 경비·청소(-)						
12 이용·숙박·여행·오락·스포츠(2/8)	121 이용·미용(7)		이용			이용	
			미용			미용(일반)	
						미용(피부)	
						미용(네일)	

	122 숙박·여행 ·오락·스포츠(1)					미용 (메이크업)
13 음식 서비스 (2/12)	131 조리(12)		조리		한식조리 중식조리 양식조리 일식조리 복어조리	한식조리 중식조리 양식조리 일식조리 복어조리 조주
		132 식당서비스				
14 건설(6/98)	141 건축(29)	건축 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	건축	거푸집
					건축 목공	건축 도장 건축 목공
			건축목재시공	건축 설비	건축 설비	
		건축 시공				
			건축일반시공		건축일반시공	
		건축품질시험				
						도배 미장 방수 비계
				실내 건축	실내 건축	실내 건축
						온수 온돌 유리 시공 전산응용건축제도 조적 철근 타일
		142 토목(46)	142 토목(46)	농어업 토목		토목
토목구조 토질 및 기초 도로 및 공항						
				건설재료시험	건설재료시험	건설재료 시험 도화
상하수도						석공
수자원 개발	잠수				잠수	잠수 전산응용 토목제도 지도제작 지적
지적 지질 및 지반				지적	지적	
				응용지질		
철도				철도토목		철도토목 측량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콘크리트	콘크리트	콘크리트
토목시공 토목품질시험						
				항로표지	항로표지	항공사진 항로표지
항만 및 해안 해양						
				해양공학 해양자원개발		

				해양환경	해양조사	
	143 조경(4)	조경		조경	조경	조경
	144 도시·교통(5)	교통 도시 계획		교통 도시 계획	교통	
	145 건설 배관(3)		배관		배관	배관
	146 건설기계 운전 (11)					양화장치 운전
						지게차 운전
						굴삭기 운전
						기중기 운전
						로더운전
						틀러운전
						블도저 운전
						천장크레인 운전
						컨테이너 크레인 운전
						타워크레인 운전
						천공기운전
15 광업자원 (2/11)	151 채광(9)			광산 보안	광산 보안	광산 보안
		자원 관리 화약류관리		화약류관리	화약류관리	시추
	152 광해방지(2)	광해 방지		광해 방지		화약취급
16 기계(7/79)	161 기계제작(14)	기계	기계가공		컴퓨터 응용가공	컴퓨터 응용선반
					기계조립	컴퓨터 응용밀링
						기계가공 조립
				일반기계		공유압
				기계설계	기계설계	전산응용 기계제도
	162 기계장비설비· 설치(31)	건설기계	건설기계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건설기계 정비
				레도장비정비	레도장비정비	레도장비 정비
		공조냉동기계		공조냉동기계 설비보전	공조냉동기계	공조냉동기계 설비보전
		산업기계설비			기계정비	기계정비
				승강기	승강기 전자부품장착	승강기 전자부품 장착
				농업기계	농업기계	농기계 정비
					생산 자동화	생산 자동화
						반도체정비유지보수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163 철도(5)	철도 차량		철도 차량	철도 차량	
			철도차량정비			철도차량정비
	164 조선(6)					동력기계정비
		조선		조선 항공	조선 항공	선체건조 전산응용조선제도
165 항공(8)	항공 기관				항공기관 정비	
	항공기체				항공기체정비	
					항공장비정비 항공전자정비	
166 자동차(8)		자동차정비	자동차정비	자동차정비	자동차보수도장 자동차 정비	

		차량				자동차 차체수리
		금형		그린전동자동차		금형
	167 금형·공작기계 (7)	금형제작			사출 금형	
				사출금형설계	프레스금형	
				프레스 금형 설계		
17 재료 (5/38)	171 금속·재료 (17)	금속 가공 금속 재료	금속재료	금속재료	금속재료	금속재료시험
		금속제련 세라믹				
			압연			압연 열처리
					재료조직평가	
			제강 제선			제강 제선 축로
	172 판금·제관·새시 (5)		판금제관		판금제관	금속재창호 (2013년 취득자 까지만 인정) 판금제관 플라스틱창호
	173 단조·주조 (4)		주조		주조	주조 원형
	174 용접 (6)	용접	용접	용접	용접	용접 특수용접
	175 도장·도금 (6)					광고도장 금속도장
		표면 처리	표면처리		표면 처리	표면처리
18 화학 (2/12)	181 화공 (9)	화공		정밀화학 화공	화약류제조	화학분석
				화약류제조 화학분석	화약류제조	
				바이오화학제품 제조	바이오화학제품 제조	
	182 위험물 (3)		위험물		위험물	위험물
19 섬유·의복 (2/17)	191 섬유 (8)	섬유		섬유	섬유 섬유디자인	염색 (날염) 염색 (침염)
		의류		의류		
	192 의복 (9)				신발	양복 양장 신발류 제조 세탁
					패션 디자인 패션 머천다이징	
					한복	한복
20 전기·전자 (2/39)	201 전기 (16)	건축전기설비 발송 배전				
			전기	전기	전기	전기
				전기공사	전기공사	
		전기 응용 전기 철도 철도 신호		전기 철도 철도 신호	전기 철도 철도 신호	철도전기신호
	202 전자 (23)			광학	광학기기	광학
				로봇기구개발 로봇소프트웨어		

				개발 로봇하드웨어 개발		
		산업계측제어			반도체 설계	
				의공	의공	
				전자계산기		의료전자 전자계산기
			전자기기		전자계산기제어	
				전자 임베디드	전자	전자기기
		전자응용				
					3D프린터개발	
						3D프린터응용
21 정보통신(3/31)	211 정보기술(15)					
				빅데이터분석		
				전자계산기조 작응용	사무 자동화	
		정보관리				
				정보처리	정보처리	정보기기응용 정보처리
		컴퓨터시스템 응용				
	212 방송·무선(6)		정보보안 방송 통신 무선 설비	정보보안 방송 통신 무선 설비	방송통신 무선설비	
	213 통신(10)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통신선로 통신선로	
			통신설비			
22 식품가공(2/11)	221 식품(7)	수산제조 식품	수산제조 식품	식품		
			식육가공		식품가공	
222 제과·제빵(4)					떡제조 제과 제빵 사진 전자출판	
23 인쇄·목재 ·가구·공예 (2/19)	231 인쇄·사진(5)			인쇄	인쇄	인쇄
	232 목재·가구·공예 (14)		귀금속가공	가구제작 귀금속가공	가구제작 귀금속가공	가구제작 귀금속가공
					도자공예	도자공예
					목공예	목공예
					보석가공 보석감정	보석가공 보석감정
					보석 디자인	보석 디자인
			피아노 조율	피아노 조율		
24 농림어업(4/39)	241 농업(14)	농화학 시설 원예		시설 원예		
					원예	
		종자		유기 농업 종자	유기 농업 종자	유기 농업 종자
				화훼 장식	화훼 장식	화훼 장식
	242 축산(5)	축산	축산	축산	축산	축산 식육처리
	243 임업(13)				버섯	
		산림		산림	산림	버섯종균 산림
				식물 보호	식물 보호	

				입산 가공 입업 종료	입산 가공	입산가공 입업종료
	244 어업(7)	수산 양식 어로		수산 양식	수산 양식 어로	수산양식
				어업생산관리		
25 안전관리(2/42)	251 안전관리(27)	가스	가스	가스	가스	가스
		건설 안전		건설 안전	건설안전	
		기계 안전				
		산업위생관리		산업 안전	산업 안전	
		소방		산업위생관리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 (기계분야)	소방설비 (기계분야)	
				소방설비 (전기분야)	소방설비 (전기분야)	
		인간공학 전기안전 화공안전		인간공학		
				화재감식평가	화재감식평가	
	252 비파괴검사(15)			농작업 안전보건 방재 누설 비파괴검사		
				방사선 비파괴검사	방사선 비파괴검사	방사선 비파괴검사
		비파괴검사				
				와전류 비파괴검사		
				자기 비파괴검사	자기 비파괴검사	자기 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 검사	초음파비파 괴검사	초음파 비파괴검사
		침투 비파괴검사	침투 비파괴검사	침투 비파괴검사		
26 환경·에너지 (2/37)	261 환경(24)				농림토양 평가관리	
		대기 관리				
				대기환경	대기환경	
				생물분류 (동물)		
				생물분류 (식물)		
		소음진동 수질 관리		소음진동	소음진동	
				수질환경	수질환경	
				자연생태복원	자연생태복원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폐기물처리	폐기물처리	
					환경	
			온실가스관리 환경위해관리	온실가스관리		
	262 에너지·기상(13)			기상 기상 감정		
기상 예보 방사선관리						
원자력발전			원자력			
		에너지관리	에너지관리	에너지관리	에너지관리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태양광)	신재생에너 지발전설비 (태양광)	신재생에너지발 전설비 (태양광)		